

, 「 」 9 .<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가 .< 2013. 6. 19., 2017. 9. 22., 2018. 5. 1.> .< 2008. 3. 14., 2013. 3. 24., 2013. 6. 19.>

7 () 「 」 (" ") 7 . (" . ") 1 (13 . 3) 12 1 (" ") .< 2011. 9. 29., 2013. 3. 24., 2016. 12. 23., 2017. 9. 22., 2018. 5. 1.>

1 2 . <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 가 8 1 .< 2011. 9. 29., 2013. 3. 24.>

- 1. .
 - 2. .
 - 3. .
 - 4. .
- 3 가 .< 2011. 9. 29., 2013. 3. 24.>

7 2() 12 2 1 (" ") . 가 . [2017. 9. 22.]

7 3() 7 2 (" ") 12 3 1 , . 1. . 가 2. 3. 1 [2017. 9. 22.]

8 (.) 13 1 " . " 가 가 .<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13 2 " " .< 2008. 3. 14., 2013. 3. 24.> 1. 가 2. ,

3. ()가
 13 4 . 1 .
 36 1 ()

.< 2011. 4. 11., 2011. 9. 29., 2012. 6. 27., 2013. 3. 24., 2016. 12. 23.,
 2017. 6. 28.>

1. .
2. .
3. .
4. 1 3 , 1
 3 1
 2 . < 2011. 9. 29., 2013.
 3. 24.>

9 () 18 1 4 " "
 < 2008. 3. 14., 2013. 3. 24.>

1. ,
- 2.
- 3.
4. 18 3
 , 가
 .<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2 .
 .< 2008. 3. 14., 2013. 3. 24.>
 18 5 .
 .< 2008. 3. 14., 2012. 11. 29., 2013. 3. 24., 2017. 6. 28.>

1. ,
2. 2 .
3. .

10 (.) 26 1 3
 . <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7 1 4 , 2
 가 5 . 6
 29 2 7
 30 1
 ()
 .<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32 2 8 .< 2018. 5. 1.>

11 () 22 1 1 3 .
 22 2 1 34 (" ")
 12 1 . ,
 4 .
 22 2 2
 5 .
 22 3 3 , (「 」 3))

12 (가) 23 1 6 , 7 .
 23 3 가 10
 8 .< 2008. 3. 14., 2013. 3. 24.>

13 () 23 5 9 () .< 2010. 10. 15., 2014. 11. 19., 2015. 1. 8.>

1. 가. , .
 . ,
 .
 .

2. 84 85 가 (「 」)
 8 1)
 1 1 .< 2008. 3. 14., 2013. 3. 24.>

14 () 13 , , .< 2014. 11. 19., 2015. 1. 8.>

1 1 , 1 .
 1 2 10 .< 2014. 11. 19., 2015. 1. 8.>

15 () 14 1 2 25 , 3 가 25 9 () ()) .< 2011. 4. 11., 2011. 9. 29., 2014. 11. 19., 2015. 1. 8.>

1. (가)
가.

2. :

3. 1 2 :
1
. < 2014. 11. 19., 2015. 1. 8. >

16 (•) 24 2 " • "
• . < 2008. 3. 14., 2013. 3. 24. >

- 1.
- 2.
- 3.
- 4.
- 5.
- 6.

1 • . < 2008. 3. 14., 2013. 3. 24. >

17 () (• ,
() 33 1 12
()
• . < 2008. 3. 14., 2010. 1. 12., 2011. 4. 11., 2015. 1. 8., 2017. 6. 28.,
2018. 5. 1. >

- 1. (2 5 1)
- 2. 36 (1 1)
- 3. 35 (1 1 가)

• 1 13
, 14 . <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

33 1 " " . <
2017. 6. 28., 2018. 5. 1. >

- 1. ()
- 2. (1 1 가)
- 3. (1 1 가) (100 50 가)

33 1 가 30
12 ()
• . < 2017. 6. 28. >

- 1. 2
- 2.

• 4 13
14
. < 2017. 6. 28. >

2 5 15

.<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1 가 16

.< 2008. 3.

14., 2010. 1. 12., 2015. 1. 8., 2017. 6. 28.>

18 () 34 1 " " 1 1 가

.< 2008. 3. 14., 2013. 3. 24.>

34 (")

- 1.
- 2.
- 3.

17 .

19 () 35 (" ")
) 1 1 가 300 .<

2018. 5. 1.>

.< 2011. 9. 29., 2018. 5. 1.>

1. , , () ()
)

2. 가
3. 가

- 4.
- 5.
- 6.
- 7.
- 8.
- 9.

35 1 18

.<

2013. 6. 19., 2014. 11. 19., 2017. 7. 28.>

35 2 " "

< 2018. 5. 1.>

1. ()

2.

3. 100 30 가

4. , 100 10

35 2 18

가 30

.< 2018. 5. 1.>

3 5

9 .< 2018. 5. 1.>

- 20 () 36 1 " "
- 1 1 . < 2008. 3. 14., 2013. 3. 24.>
- 20 2() 36 2 1 " " 1 1
- 가 .
- 36 2 1 (" ") . 9
- 2 .
- 36 2 2 " " .< 2018.
5. 1.>
- 1.
2. , , ,
- [2014. 9. 17.]
- 21 (.) 37 1
- . .< 2014. 9. 17., 2018. 5. 1.>
- 1.
2. (가 100 15 가
-)
3. (가 「
- 」 13 1 가 2) 가 2
-)
- 37 1 .
- 72 2 .
- 39 2 .< 2013. 6. 19.>
- 37 2 「 」 25 8 (" "
-)가 1 .
- . , 「 」 18 3 .
- 45 2 .< 2018. 5.
- 1.>
1. ()
2. ()
- 3.
- 4.
- 5.
- 22 () 38 2 (" "
-) .
- 1.
2. 가
- 19 .
- 2 .
- 23 (.) 38 1 3
- 10 .

38 3

. < 2008. 3. 14., 2013. 3. 24.>

24 ()

39 1 5

. < 2011. 9. 29., 2013. 3.

24., 2017. 9. 22., 2018. 5. 1.>

1

. < 2011. 9. 29., 2013. 3. 24.>

1

39 1

. <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1. 가 2

2. 「 가 2 2 가

3. 「 가 2 1

16 15

1 「 가 2 1

[2018. 5. 1.]

25 ()

(" "

) 40 2

1.

2. 2 5

26 (가)

61 1 "

.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2. .

1 2 " . "

(散積)

, . (가) .

27 ()

44 3

1. 가

2.

3. , , .

4. . (.)

5.

28 ()

62 2

. < 2008. 3. 14.,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 1.
- 2.
- 3.
- 4.
- 5.

[[2014. 11. 19., 2017. 7. 28.](#)]

29 () 63

- 1.
- 2.
- 3.
- 4.

1

.< [2014. 11. 19., 2017. 7. 28.](#)>

30 ()

.< [2014. 11. 19.,](#)

[2017. 7. 28.](#)>

31 () 65 1

- 1.
- 2.
- 3.

가

4. 1 3

가

32 () 66 1

(" ")

1. 300

2. 100

66 3

11

10

33

2

67 1

(" ")

2

66

33 () 66 3

.<

[2010. 1. 12., 2011. 9. 29., 2013. 6. 19., 2018. 5. 1.](#)>

1. 가 . ()
2. 「 . 」 2 3 「 」 3 1
3. 97 .
- 66 3 . 12 ,
- 1 13 .< [2011. 9. 29.](#)>
- 34 () 67 1 3
- 3 .
- 67 2 .
- .< [2018. 5. 1.](#)>
1. :
2. .
- 가.
- .
- .
- .
- 35 () 50 20 .< [2010. 1. 12.](#)>
- 36 () 55 1 2 (70 1
- .)
1. 70 1 1 (" ") : 21
2. 70 1 2 (" " ") : 22
3. 70 1 3 (" " ") : 23
4. 70 1 4 (" " ") : 24
5. 70 1 5 (" " ") :
- 25
- 70 1 3 " " .<
- [2008. 3. 14., 2013. 3. 24.](#)>
1. 21 1
2. 「 」 28
- 70 2 14 .
- 70
- .< [2008. 3. 1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 55 4 .< [2008. 3. 14., 2016. 12. 23.](#)>
1. : 26
2. : 27

- 3. : 28
 - 4. : 29
 - 5. : 30
- 70 (" ") .<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37 () 70 3 " " .<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016. 12. 23., 2017. 6. 28.>](#)

- 1. 가. (74 •),
· , ,
· ,
·

- 2. 가. (74 •),
·
·
·

70 3 31

.< [2008. 3. 14., 2010. 1. 12., 2011. 12. 29.,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 1. 1 1 가 • : 가 30
- 2. 1 1 : 가
- 3. 1 1 :
- 4. 1 2 : 가 30
- 5. <[2010. 1. 12.](#)>

2 「 」 36 1 , 2

.< [2017. 6. 28., 2017. 7. 28.](#)>

- 1. ()
- 2. 가 가 (1 2)

37 2() 70 2 1 .< [2013. 3. 24.](#)>

- 1
- 1.
- 2.
- 3.
- 4.

.< 2013. 3. 24.>

[2012. 11. 29.]

38 () 70 (") 72 1 10 , . 76 2 1 .<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70 (" ") 72 1 가 15 .< 2008. 3. 14., 2015. 1. 8.> 70 (" ") 72 1 가 15 . 115 7 .< 2011. 9. 29., 2014. 11. 19., 2017. 7. 28.>

19., 2017. 7. 28.>

- 1. 1 3 .
- 2. : 32
- 3. : 33
- 4. : 34
- 5. : 35
- 6. : 36
- 7. : 37
- 8. : 38
- 9. 1 3 3 .
- 10. 76 2 115 7 .< 2010. 1. 12., 2011. 9. 29.>

39 () 72 2 39 . 1 3 .

40 (.) 72 3 가 .< 2013. 6. 19.>

- 1.
- 2. 6 1 2
- 3. 7 가 , 6 1 2), , 7 3 가
- 4.
- 5. 「 」 7 1 2

- 41 () 72 3
 40 42 10
 76 2
 . <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1 3 76 2
 . < 2010. 1. 12.>
- 42 () 73
 . <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1.
 2. 「
 3. 「
 4.
- 43 () 74 1 2
 3 43
 . < 2008. 3. 14., 2010. 1. 12.,
 2014. 11. 19., 2015. 1. 8., 2016. 12. 23., 2017. 7. 28.>
 1. ,
 2.
 3. ()
 1 「 」 36 1
 2
 . < 2016. 12. 23., 2017. 7. 28.>
 1. ()
 2. 가 ()
- 44 () 75
 15 .
- 45 () 76 1
 44 () ()
) 「
 」 36 1 「 가 」 33
 가 (가)
 . < 2011. 4. 11.,
 2011. 9. 29., 2011. 12. 29., 2014. 11. 19., 2015. 1. 8.>
 1. .
 2. ()
 3. <2011. 4. 11.>
 4. 35
 5. 44 2 가
 1 . 8
 45 .
 . < 2014. 11. 19., 2015. 1. 8.>

2 가 8

.< 2014. 11. 19., 2015. 1. 8.>

.< 2008.

76 1 " " .< 2008. 3. 14., 2013. 3. 24.>

- 1.
- 2.
- 3.
- 4.
- 5.

6. (6 100 150)

76 1 . 4 1 . 3 6
가 30 , 4 2 . 4 5
44 . ()

7 1 4 (4 2 115)

.< 2011. 9. 29., 2014.

11. 19., 2015. 1. 8.>

- 1.
- 2.
- 3. <2011. 9. 29.>

1 5

.< 2011. 12. 29., 2014. 11. 19., 2015. 1. 8.>

46 () 58 3 1 " " 12
2 .< 2008. 3. 14., 2013. 3. 24.>

77 3 4
「 」 7 .<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2013. 6. 19.>

47 () 82
16 .

47 2(가) 83 2 1 2 (「 」
2 1 , 47 3 47 5
) 가 (危害度) 가(" 가") 가 가
가 16 2 .

가 가 , , 가 .
가 .< 2018. 5. 1.>

- 1. : 가 가 60

2. : 가 가 40 60
3. : 가 가 40

[2013. 6. 19.]

47 3() 가 83 2 1 3
(" ") .

1 , , , (底質) , , 77 , .

47 2 3 1

가

가 ,
. < 2018. 5. 1.>

47 2 3 2

가

. <

2018. 5. 1.>

[2013. 6. 19.]

47 4() , , , ,

83 2 3

가

30

가 3

7

20

[2013. 6. 19.]

47 5() 83 2 2
45 2

. < 2014. 11. 19., 2017. 7. 28.>

[2013. 6. 19.]

48 () 84 1 (" ")
· 가 (" ") 84 .
「 가 」 22 가 27 2

. < 2010. 1. 12., 2012. 11. 29.>

84 3 (" ") 17

. < 2010. 1. 12.>

2 「 84 1 3 , 「 」 14

「

」 8 4 . 가

46 2 . < 2010. 1. 12., 2010. 10.

15., 2012. 11. 29., 2014. 12. 19.>

.< 2008. 3. 14., 2010. 1. 12.,

2013. 3. 24.>

49 (가) 85 2 가 (" 가 ")

- 1.
- 2.
- 3. (18 가)
- 4. 85 3
- 5. 95 1

가 .< 2008. 3. 14., 2013. 3. 24.>

50 (가) 85 2 가 (" 가 ")
) 49 1 1 3 5 가 .< 2010. 1. 12.>

가 1 가 .< 2008. 3. 14., 2013. 3. 24.>

2 가 , 51 . 1

.< 2010. 1. 12.>

3 가 47 가 48 , 20 가 가 가

- 1. 가
- 2. 가

51 () 가 50 가 (" ") .< 2012. 11. 29., 2014. 12. 19.>

- 1. 50 가 30
- 2. 50 가 5 30
- 3. 85 1 7 8 가 1 , 100 50 , 14 1 가 2 가 2 가

1. : 가

2. : 가

[2010. 1. 12.]

52 () 가
 가 , 가 가 가
 1 가 가 가
 . . (2 . .
) 가 .
 가 가 . .
 가 51 가 7 49

[2010. 1. 12.]

53 (가) 85 2
 가 19 . <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가 가 10
 . <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2 50 가 가
 30
 . <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54 (가) 86 1 가 (" 가 ")
 20 .
 86 1 " " . < 2008. 3.
 14., 2013. 3. 24.>

- 1.
2. 가 ()
3. 가
- 4.

86 가 51 가
 () ,
 가 . < 2008. 3. 14., 2015. 1. 8.>

54 2(가) 64 3 가 51 2 .
 [2010. 1. 12.]

55 () 54 3 1
 52 가 . < 2008. 3. 14., 2015. 1. 8.>
 가 가 3 . < 2008. 3.
 14., 2015. 1. 8.>

55 2() 86 2 51 3 .
.< 2015. 1. 8.>
[2012. 11. 29.]

56 (가) 88 2 " "
5 .< 2008. 3. 14., 2013. 3. 24.>

57 (가) 89 가
21 .

58 () 67 1 " "
.< 2008. 3. 14., 2013. 3. 24., 2014. 12. 19.>

1. 84 1 : 30 (「
」 3 1 가 15)
2. 85 1 가 : 45
84 4 가 (" ")가
가 (" ") 1

59 () 69 1 53 .

59 2() 70 2 3 " "
.< 2013. 3. 24.>

1. 가 가
- 2.
- 3.
4. 1 3

[2011. 9. 29.]

60 () 95 1
30 54
. , 1 1 31
.<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1 가
95 2 .< 2008. 3. 14.,
2012. 11. 29., 2015. 1. 8.>

- 1.
 - 2.
 - 3.
- 95 2 54 2 .< 2012. 11. 29.>

60 2(•) 108 1 「 」 36
.
.< 2014. 11. 19., 2017. 7. 28., 2018. 5. 1.>

- 1.
- 2.
- 3.
- 4.
- 5.
- 6.

[2011. 9. 29.]

61 () 110 1 2 . < 2012. 11. 29., 2016. 12. 23.>

- 1.
- 2.
- 3.
- 4.
- 5.

62 () 110 1 55 (.) . < 2011. 9. 29., 2012. 11. 29., 2013. 3. 24.>

- 1. 69 2
- 2.
- 3.
- 4. ()

가 , , . < 2011. 9. 29., 2013. 3. 24.>

110 1 55 (.) . < 2012. 11. 29., 2013. 3. 24.>

- 1.
- 2.
- 3. ()
- 4. .

[2012. 11. 29.]

63 () 62 . <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 1.
- 2. ,
- 3. ()

1 55 (.) . < 2011. 9. 29., 2012. 11. 29., 2013. 3. 24.>

- 1.
- 2.
- 3.
- 4.

64 () 61 110 2

56

. < 2011. 9. 29., 2013. 3. 24.>

가 1

1

. < 2010. 1. 12.>

1

. <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1

. <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22

. < 2010. 1. 12., 2011. 9. 29., 2013. 3. 24.>

65 () 110 2 61

110 2

57

. < 2011. 9. 29., 2013. 3. 24.>

2

. < 2011. 9. 29., 2013. 3. 24.>

1

「 가 」 15

23

. < 2011. 9. 29., 2013. 3. 24.>

66 () 110 4

- 1.
- 2.
- 3.
- 4.
- 5.

(生物淨化製劑)

110 4

(

)

58

()

. < 2010. 1. 12.,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가. <2011. 9. 29.>

2.

가.

110 4

58

()

<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2.

[2012. 11. 29.]

67 ()

110 1 4

59

60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68 () 110 1 4
24 ()

67 1

69 () 110 5
61

62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가

63

64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70 () 110 6

65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가 2

66

「 가 22 4 1

25 가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71 () 110 7 . < 2014. 11. 19., 2017. 7. 28.>

1. .

2. .

1 67 .

1 .

< 2014. 11. 19., 2017. 7. 28.>

1 68 .

. < 2014. 11. 19., 2017. 7. 28.>

72 () 110 9

26 .

가 , 가 6 1 .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 2 .

< 2011. 9. 29.,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72 2() 110 2 1

. (") 72 3

가 . < 2014. 11. 19., 2017. 7. 28.>

110 2 1 . 58

2 .

< 2014. 11. 19., 2017. 7. 28.>

1.

2.

3. () 15

2 .

< 2014. 11. 19., 2017. 7. 28.>

3 (72 6

) . < 2014. 11. 19., 2017. 7. 28.>

4 72 5 , 2

. < 2014. 11. 19., 2017. 7. 28.>

28.>

60 2

. < 2014. 11. 19., 2017. 7. 28.>

6 .

. < 2014. 11. 19., 2017. 7. 28.>

[2011. 9. 29.]

72 3() 72 2 1 (" ") . < 2017. 7. 28.>

- 1. .
- 2. .
- 3. .

1 7 11 .

가

가 2 1 .< 2017. 7. 28.>

- 1. 5 .
- 2. 112 3 가
- 3. .

3 ,

1 ,

.< 2017. 7. 28.>

[2014. 11. 19.]

72 4() (" ") ,

[2011. 9. 29.]

72 5() 110 2 2 .
62 2 .

72 2 4

64 2

[2011. 9. 29.]

72 6() 110 2 1 가 110
2 3 65 2 .

.< 2014. 11. 19., 2017. 7. 28.>

가 72 2 4

66 2 .

25 2

.< 2014. 11. 19., 2017. 7. 28.>

[2011. 9. 29.]

72 7() 110 2 4

. < 2014. 11. 19., 2017. 7. 28.>

1 가 2

. < 2014. 11. 19., 2017. 7. 28.>

가 2

가 . < 2014. 11. 19., 2017. 7. 28.>

. < 2014. 11. 19., 2017. 7. 28.>

[2011. 9. 29.]

72 8() 110 1 4 110
2 1 110 3 2 66 3

1. . .

2. 67 1 72 2 6

1 「 」 36 1
2

1. ()

2. 가 ()

[2018. 5. 1.]

73 () 111 1
69 7

. <

2014. 11. 19., 2017. 7. 28.>

1. 가.

2. 가

3.

4.

111 1 " " 100
(200) ()

.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111 3 . 27 .

74 () 112 3 " "

. < 2008. 3. 14., 2013. 3. 24.>

1. . . : 28

2. . . : 29

112 3 70

71 .

「 」 36 1 ()
< 2008. 3. 14., 2011. 4. 11., 2013. 3. 24., 2014. 11. 19., 2017. 6. 28., 2017. 7. 28.>

- 1. <2011. 4. 11.>
- 2. ()
- 3. ,
- 4.

2 72

73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 3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28.>

- 1. ,
- 2.
- 3.
- 4.
- 5.
- 6.

74 2()

74 2 3
10

< 2014. 11. 19., 2017. 7. 28.>

1. 110 1 • 2 4 7

2. 110 2 2 3

[2013. 6. 19.]

75 () 74

113 3

30

1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76 () 115 2 3

<

2010. 1. 12.>

- 1. <2010. 1. 12.>
- 2. <2011. 9. 29.>
- 3. <2010. 1. 12.>
- 4. <2010. 1. 12.>
- 5.
- 6. 111 1

7. <2010. 1. 12.>

8. <2010. 1. 12.>

115 1 3

•

.< 2010. 1.

12.>

1.

가.

(1 1 가

300

)

• , , ,

• , , •

• ,

•

(1 1)

2.

가.

•

•

•

•

가

3.

가.

,

•

4.

•

가.

• , , •

• ,

•

()

•

()

5.

가.

•

•

6.

가.

•

•

•

77 (

)

116

1

74

•

78 (

•

)

92

1

•

.<

2013. 6. 19.>

1.

•

: 3

2. 1 () : 2

32 36 70 2

121 2

(乘船)

.< 2017. 6. 28., 2018. 5. 1.>

92 1

.<

2018. 5. 1.>

79 ()

11 30

92 1

.<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1

1. .

2. .

3. , ,

4.

5. 가

80 (.)

1 31

.< 2008. 3. 14., 2013. 3. 24.,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18. 5. 1.>

1.

: , , ,

2.

, , :

3.

, :

1

15

.< 2018. 5. 1.>

.<

2018. 5. 1.>

.<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81 (.)

15

80 1

.< 2008. 3. 14., 2013. 3.

24., 2018. 5. 1.>

82 (.)

92 1

.< 2008. 3. 14., 2013. 3. 24.>

1. <2013. 6. 19.>

2. 121 가

< 401 ,2008. 1. 18.>

1 () 2008 1 20 . , 15 1
2008 7 1 , 8 1 가 2008 8 22
, 61 64 2010 1 20 , 8 1 2
1 2011 2 22 , 25 「 」

2 () 「 」 .

3 () 82 1 2010 12 31 가 .

4 (가) 6 2 7 2 가 2)
2015 12 31 .

8 3 .
5 () 가 .
28 " 「 」 " " 「 」 " .

13 " 「 」 2 1 2 " " 「 」 1
1 " .

8 2 1 " 「 」 23" " 「 」 14" ,
1 2 5 " 「 」 " " 「 」 " .

18 2 " 「 」 2 1 " " 「 」 2 5 " .

2 2 " 「 」 " " 「 」 " .

26 4 .

5 3 6 " 「 」 " " 「 」 " , 5 5 "
" " " " .

6 () 「 」

< >

402 (2008.1.31)

< 4 ,2008. 3. 14.>(가)

< 140 ,2009. 6. 24.>()

< 191 ,2009. 12. 14.>()

1 ()

2

3 ()

2 5 " 「 」 8 2 " " 「 . 」

31 2 " .

4

< 211 ,2010. 1. 12.>
. , 12 2 .

< 279 ,2010. 9. 6.>

< 300 ,2010. 10. 15.>()

1 ()

2 4

5 ()

13 1 2 " 「 」 5 1 " " 「 」 8 1

" .

48 3 " 「 」 5 4 " " 「 」 8 4 "

58 가 32 2

58 2 가 32 2

3 () 가 가
51

< 539 ,2012. 11. 29.>

1 () 2012 12 2

2 (가) 19
가

< 555 ,2012. 12. 21.>

1 () 2013 1 1

2 () 6 1 6 1

가 2014 1 1 2015 12 31

7

, 10

8

. < 2013.3.24>

3 () 2014 1 1

(36) ("

") 가

2014 3 31 , 2

2

가 2 3

7

, 10

8

< 1 ,2013. 3. 24.>()

1 ()

2 4

5 5 () <61>

<62>

2 , 3 , 8 1 , 2 , 9 1 , 16 1
 , 18 1 , 20 , 26 1 , 36 2 , 37 1
 , 45 4 , 46 1 , 54 2 , 56 , 58 1
 , 59 2 , 73 2 , 74 1 , 21 2 2)
 " " " " .
 5 1 , 2 , 3 • 4 , 6 2 ,
 3 , 4 , 7 1 • 2 , 3 , 1 ,
 4 , 8 1 , 3 • , 4 , 9 1 2 • 4 ,
 3 , 4 3 , 10 1 , 12 2 , 13 2 , 16 2 , 23 2 , 24
 1 • 2 , 3 , 1 , 28 , 37 2 1 • 3 ,
 46 2 , 48 4 , 49 2 , 50 2 , 53 1 3 , 59 2 4 ,
 62 1 , 2 , 3 , 63 1 ,
 2 , 64 1 , 3 5 , 65 2 • 3 • 5 , 67
 1 , 2 , 69 1 • 2 , 70 1 3 , 72 2 , 3 ,
 74 2 • , 3 , 4 , 6 , 75
 2 , 79 1 , 80 1 1 , 4 , 81 , 82 1 • 2 , 83 4 , 84 1
 • 2 , 85 3 • 4 , 1 1 , 2 12 , 3 1 ,
 6 3 , 4 , • , 8 1 , 10 2
 3), 23, 1 , 2 , 24
 () 3 , 25 () 3 ,
 50 , 55 , 56 ,
 57 , 59 , 61 , 63 ,
 65 , 66 , 70 , 72 74
 " " " " .
 2 13 , 1 () , 2 () ,
 55 , 56 , 57
 , 61 , 65 70
 " " " " .

66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74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555

2

"

"

"

"

.

<63>

< 29 ,2013. 6. 19.>

. , 78 1

2014 1 1

.

< 61 ,2013. 12. 30.>

.

< 63 ,2013. 12. 30.>()

2014 1 1

.

< 97 ,2014. 9. 17.>

1 ()

2014 9 25

.

2 (

)

9 2

2014 12 31

.

< 109 ,2014. 11. 19.>

.

< 122 ,2014. 12. 19.>

1 ()

.

2 (

)

48 3

. 가

46 2

.

가

3 (

)

58 1 1

58 1 1

< 127 ,2014. 12. 31.>()

)

.

< 134 ,2015. 1. 8.>()

1 ()

2

3 () ⑩

⑪

9 2 , 10 4 , 13 1 , 14 1 · 3 , 15 1 ,
 2 , 17 1 , 2 , 3 · 4 , 36 4 · 6 ,
 37 2 , 38 1 , 2 , 41 1 , 42 ,
 43 , 45 1 · , 2 · 3 , 5 ·
 , 6 , 53 1 3 , 54 3 , 55 1 · 2 , 55 2 2 , 60
 1 , 2 , 80 1 1 · 2 , 84 1 , 7 3 , 9 2
 3 가 , 33 3 · 5 10 , 3 , 4 , 5
 , 7 , 8 , 9 , 10 , 12 ,
 14 , 15 , 16 , 21 , 24
 , 25 , 26 , 29 , 30 ,
 31 , 32 , 35 , 43 , 44 , 45
 , 50 , 51 · , 51 2 ,
 51 3 , 52 54 2 " " "
 " .
 16 2 " " " " .
 4 () , 7 , 8 , 9
 , 21 , 31 , 43
 , 44 , 46 2 , 50
 51 3 " " " " .
 12 , 15 , 24 ,
 25 51 " ()" "
 ()" .

⑫ ⑬

< 138 ,2015. 2. 25.>

< 141 ,2015. 4. 30.>

< 188 ,2016. 5. 10.>

< 194 ,2016. 6. 30.> ()

- 1 ()
- 2 5
- 6 (「 」) 「 」 15 2 가 5)

< 213 ,2016. 12. 23.>

- 1 ()
- 2 () 37 1
- 3 () 12
- 43
- 4 (가) 가 가
- 20 2 20 2
- 1

< 220 ,2017. 1. 12.>

< 242 ,2017. 6. 28.>

2017 6 28

< 251 ,2017. 7. 28.> ()

< 253 ,2017. 9. 22.>

2017 9 22 .

< 286 ,2018. 5. 1.>

1 () .

2 () .

9 4 8 " " " " .

7 10 10 22 8 7 " " " " .

< 331 ,2019. 3. 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3.24>

해양시설의 범위 (제3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마.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나.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지름을 합한다)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다. 유어장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 9. 2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3.3.24>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 (제11조제1항 관련)

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1. 수저준설토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조개껍질류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과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유리조각류 등의 비가연성폐기물	가.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할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를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상등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제11조제2항 관련)

해역별방류 기준 폐기물	해역별	방류기준
분뇨·오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mg/l 이내 배출
	그 밖의 해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mg/l 이내 배출

비고: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및 구조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처리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지역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5. 10.>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가. 삭제 <2012.12.21>
 - 나. 삭제 <2016. 5. 10.>
 - 다. 삭제 <2016. 5. 10.>
 - 라. 삭제 <2011.12.29>
 - 마. 어류·패류의 것갈 또는 그 것갈의 생산·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 바.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
 -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동·식물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동·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
2.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
 - 나.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 페어구, 플라스틱류, 님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하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

: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산화탄소스트림의 성질과 상태, 해저지질구조와 위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비고

1. 액상은 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2.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5.1.8.>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 (제12조제1항 관련)

해역	배출해역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갑해역 전역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병해역: 모든 국가의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만, 액상인 경우 또는 해수 등을 회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3. 정해역: 병해역	가. 동해 정해역:	1) 별표 6 제1호나	확산식처리방법에

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목1) 및 바목에 따 른 폐기물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 지 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 하여 지정하는 해 역	별표 6 제2호에 따 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 해의 범위 안의 해 역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 여 지정하는 해역	별표 6 제2호에서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비고

1. 무해역은 다음 각 목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 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2. 해양배출 시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시멘트는 수경성시멘트를 사용할 것
 - 나. 시멘트의 양은 콘크리트 1m³당 150kg 이상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양생한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kg/cm² 이상일 것
 -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부피와 1변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 3) 최소변의 길이는 30cm 이상일 것
3. 확산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 가. 해변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평균 대수속도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 다. 합성로프, 페어구, 플라스틱류, 닐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할 것
 - 라. 황산제1철 또는 염화제2철을 0.1% 이상 섞어 넣어 갈아서 부술 것(분뇨 처리시설 등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로 한정한다)
 - 마.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가공잔재물로 한정한다)
4. 집중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 다. 가루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6.19>

해양배출처리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별표 6 제1호나목·다목 및 사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조(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조(a)안트라센	5	1
벤조(b)플루오란텐	4	0.8

2. 별표 6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3.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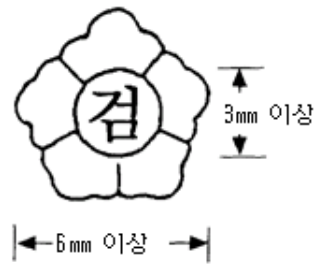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비고

1.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 나.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4.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5.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18. 5. 1.>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제2항 관련)

1. 실시 시기

반기(半期)별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반기 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그 점검 및 검사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다. 소화 설비·장비, 방제선, 방제 장비·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라. 해양시설 주변의 공사 현황 및 영향

마.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및 현행화 여부

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 체계 확립 여부

사.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

3. 안전점검 결과보고

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 제2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영 제94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시설의 명칭, 종류, 시설 규모, 소재지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 일정

3) 안전점검 결과

4)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6. 12. 2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춘 것
-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구분	저장능력 합계	200m ³ 이하		200m ³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자격능력		운영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운영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비고

-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된다.
 - 자격범위: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적분분야
- 2) 저장능력 200m³ 이하의 시설에서는 기능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m³ 초과 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구분	저장능력 합계	200m ³ 이하			200m ³ 초과		
		항목	기준	기준	항목	기준	기준
물리적 처리시설		기름여과장치	1기	3m ³ /h	기름여과장치	1기	5m ³ /h
		유수분리시설	1기	이상	유수분리시설	1기	이상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화학적 처리시설	/			침강시설 중화시설 흡착시설	1기 1기 1기	5m ³ /h 이상

비고

- 1) 물리적처리시설: 저장능력에 관계 없이 적용
 - 가) 기름여과장치: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
 - 나) 유수분리시설: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기름과 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
 - 다) 침전시설: 중력에 의한 자연침전으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
 - 라) 여과시설: 유성혼합물의 부유물 및 그 밖의 고형성분을 분리하는 설비
- 2) 화학적처리시설: 저장능력 200m³ 초과 시설에 적용
 - 가) 침강시설: 유성혼합물에 용액이나 겔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혼탁·침전시키는 설비
 - 나) 중화시설: 응집, 산화, 환원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이온농도 (pH)를 조정해 주는 설비
 - 다) 흡착시설: 여과시설을 거친 처리수 또는 화학적·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잔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 및 탈취하는 설비
 - 200m³ 초과 시설에서 필요한 화학적처리시설의 개별설비 외에 종합설비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량

구분	저장능력 합계 200m ³ 이하		200m ³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수집·운반	버큘탱크로리	5톤 이상	버큘탱크로리	8톤 이상
	카고트럭	1톤 이상	카고트럭	1톤 이상

비고

- 1)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수집·운반하는 버큘탱크로리, 카고트럭을 각각 1대씩 보유하여야 한다.
- 2)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버큘탱크로리 및 카고트럭의 기준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 3) 오염물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저장시설까지 운반하는 차량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집·운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4) 필요 시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또는 포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통사항

- 1) 저장능력합계는 저장탱크의 유량 유종에 관계없이 총 합계를 포함한다.
- 2) 저장시설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물질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3)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과 안전율을 고려한 저장탱크 방호벽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 4) 저장시설의 용량 및 폐기물의 운송수단은 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폐기물의 유형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m³ 초과 시설에서는 최소 4명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관리·유지 및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업무를 수행한다.
-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3) 저장능력 합계 200m³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

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m³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의 배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른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 가동률을 유지한다.
-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비치서류

- 1)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계획서
- 2) 해양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 3)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교육수료증
- 4)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군·경 합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0.1.12>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비치대상	구분	종류	비치량
1. 제32조제1항제 1호의 저장시설	가. 5만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오일펜스 B형 또는 C형	기름의 양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kl 이상 2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kl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나. 5만kl 미만 300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오일펜스 A형 또는 B형	기름의 양이 300kl 이상 1천kl 미만인 경우에는 200m, 1천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320m, 1만kl 이상 5만kl 미만인 경우에는 460m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2. 제32조제1항제 2호의 계류시설	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유조선 계류하는 시설	오일펜스 B형 또는 C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나. 총톤수 10만톤 미만 100톤 이상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오일펜스 A형 또는 B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비고

1. 오일펜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수면 위(cm)	수면 아래(cm)
A형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B형	30 이상 60 미만	40 이상 90 미만
C형	60 이상	90 이상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kl)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결화제의 양[액상(kl), 분말(t)]

U:

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둘 수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총톤수	300이상 1천미만	1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5만미만	5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20만이상
U	10	15	20	25	30	40	50

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W: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표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5.2.25.>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설치 항만	자재 비치기준	오일펜스 (m)	유흡착재 (kg)
최고위험도 항만 (광양, 대산, 울산)		1,000	2,000
고위험도 항만 (부산, 인천, 군산)		800	1,000
중위험도 항만 (평택·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산, 옥포, 제주, 동해·묵호, 옥계, 보령, 삼천포, 호산, 장항, 여수, 진해, 완도, 통영, 서귀포, 속초, 장승포, 삼척, 하동)		500	500
저위험도 항만 (경인, 서울, 급유선 입출항 연안항 및 국가어항)		200	200
<p>비고</p> <p>1. 최고위험도 항만 및 고위험도 항만에서는 오일펜스 B형과 C형을 혼합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2. 삭제 <2011.9.29></p>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7. 7. 28.>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제33조제2항 관련)

1.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 가. 보관된 자재·약제를 비·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방수시공된 것일 것
- 나. 자재·약제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환기장치와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조명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자재·약제를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반출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 마. 자재·약제의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선박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보관시설의 운영기준

- 가. 보관시설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관리요원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요원과 항상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
- 나. 방제활동을 위한 통신망 확보 등 관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다. 다음 사항이 기록된 보관시설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있을 것
 - 1)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 2) 자재·약제의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 3) 보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 4) 자재·약제의 긴급반출·이송요령
 - 5) 그 밖의 비상시의 조치사항

비고

인근 항만의 보관시설에서 해당 항만까지 3시간 이내에 방제 자재·약제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9. 3. 8.>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제3항 관련)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		기준			
폐기물 운반선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척수	1척 이상	
	요건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			
	설비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 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 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인 것으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선저 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개방되지 아니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도, 침로 등 항행상황과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저개폐문)의 개폐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춘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중 적절한 것을 갖춘 것		
	구조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 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창구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 또는 조개 껍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물창에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규모	주된 적재지(통상적으로 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대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m ³ 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소규모의 선박총톤수에 1m ³ 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 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안전 기준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호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을 것
폐기물 운반차량 (탱크로리)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대수	1대 이상
	구조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에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계측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차량 표시	청색[색 번호 10B5-12(1026)]으로 도장하고 양 측면과 후면에 가로90cm, 세로40cm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해양배출폐기물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안전	운반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		

비고

1.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고, 저장시설과 폐기물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실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저장시설의 설치자는 "저장시설"란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정기적(최초 완공검사 후 10년, 그 후에는 5년마다)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삭제 <2016. 12. 23.>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
장비	유회수기	시간당 회수용량 합계 20m ³ 이상
	고압세척기	동작압력 150kg/cm ² 이상으로 1대 이상
	예열기	5kW 이상으로 2대 이상
	점도유이송펌프	15kW 이상으로 1대 이상
자재	오일펜스	B형 이상으로 300m 이상
	유흡착재	200kg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의

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방제선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유조부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6. 방제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유창청소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kg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핀	2대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유조부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폐기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물수거선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mm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비고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항목		기준			
퇴적오염 물질 수 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 장치	1식		
		밀도계	1식		
		탁도계	1식		
펌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비고

1.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이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을 말한다.
2. 위성항법보정장치(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실시간 위치 및 퇴적오염물질 프로그램 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도계란 실시간으로 퇴적오염물질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오염물질배출관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탁도계는 작업 중 부유퇴적오염물질의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하는 현장용 탁도 측정장비를 말한다.
5. 자동수심측정기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전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양묘선이란 앵커(닻)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는 설비를 갖추고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거나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는 선박을 말한다.
7.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퇴적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퇴적오염물질 수거선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8. 5. 1.>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바.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 횟수는 선박별로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75조	등록취소			

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나) 저장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경우		등록취소			
라)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규모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6개월
마)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		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사)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가) 폐기물해양배출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나) 폐기물 보관·관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저장시설 사용정지 10일	저장시설 사용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	법 제75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제1항제7호			10일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해양오염방제업자·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등록취소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경우 라) 기술요원이 등록요건 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마)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설비 및 장비가 등 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설비 및 장비가 등 록요건에 맞도록 유지 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월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 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 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 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 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 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 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한다.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 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장비 및 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다) 폐기물해양수거업무 수행 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수거선박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p>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p> <p>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p> <p>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나) 선박, 장비 및 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다) 퇴적오염물질수거업무 수행 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무로 등록하지 아니한 퇴적오염물질수거선박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는 경우</p> <p>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p> <p>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법 제75조 제1항제2호</p> <p>법 제75조 제1항제3호</p> <p>법 제75조 제1항제4호</p> <p>법 제75조 제1항제5호</p> <p>법 제75조 제1항제6호</p> <p>법 제75조 제1항제7호</p> <p>법 제75조 제1항제8호</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경고</p> <p>등록취소</p> <p>영업정지 6개월</p> <p>경고</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영업정지 6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	--	---	---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8. 5. 1.>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나. 가목의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2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 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 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 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 게 행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15.1.8.>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제47조의3제1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항목별 평가지수		비 고
			배분율	평가점수	
선박 종류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5%	5	유조선에는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운반선에는 가스운반선, 케미칼탱커, 방사성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일반화물선			4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3	
	부선 등 기타			2	
	미상			1	
선박 규모	10,000톤 이상		5%	5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4.5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			4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			3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2	
	500톤 미만			1	
잔존 기름 (연료유 포함), 유해 액체물질, 폭발성 가스	1,000kl 이상		35%	35	규모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분류 기준을 참조한다. - 대형: 1,000kl 이상 - 중형: 100kl 이상 - 소형: 100kl 미만
	100kl 이상			28	
	50kl 이상			21	
	10kl 이상			10.5	
	10kl 미만			3.5	
	0kl			0	
	방사성물질			35	
어유 수심	15m 미만		25%	25	IHO의 안전한계 수심 산정기준을 참조한다.
	20m 미만			20	
	25m 미만			12.5	
	30m 미만			5.0	
	30m 이상			0	
해역 환경 민감도	주요어장 및 양식장		10%	10	해역 정보를 참조한다.
	해양국립공원 및 청정해역			8	
	해수욕장 등 관광지역			6	
	환경보전해역			4	
	국가 특수시설지역			2	
	기타			1	
유출 가능성	사고 전 선령	20년 이상	10%	4	항해 중인 상태에서 부식량을 고려한다.
		10년 이상		3	
		5년 이상		2	
		5년 미만		1	
	사고 후 경과기간	25년 이상		6	사고 후 비관리상태에서 부식량을 고려한다.
		20년 이상		5	
		15년 이상		4	
		10년 이상		3	
		5년 이상		2	
		5년 미만		1	
해상 교통환경	항만 입출항 항로		10%	10	해상 교통정보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정보를 참조한다.
	항계안 또는 항계부근			8	
	묘박지			6	
	일반항로			4	
	기타			2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0.10.15>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제48조제2항 관련)

구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가. 매립사업계획서 나. 매립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매립계획평면도 라. 매립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매립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매립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가.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점용 및 사용 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점용 및 사용계획 평면도 라. 점용 및 사용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4.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허가, 예정지의 지정, 단지의 지정	가. 바다골재채취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바다골재채취 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바다골재채취 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라. 바다골재채취 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 등), 부존량 및 해저지형,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마. 바다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비고: 1.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대해서는 위 별표

내용 중 해양환경 개황 등 일부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2.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기간 변경: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
- 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제3호 가목 및 나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해역이용영향평가항목(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평가 항목	기상,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동물, 경관·위락, 산업, 보호종 및 보호구역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2.11.29>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제53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항로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 허가 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개발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 전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8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개발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6. 12. 23.>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5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평가대행자 외의 다른 기관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분야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대체 가능 기술자격	
		대체 자격	관련 전공
총괄	해양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1) 관련 전공 박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 전공 석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해양 또는 환경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수산 및 환경 관련 전공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중 1명 이상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환경	해양수산 및 환경 관련 전공

	보유	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자연 환경	해양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관련 전공 박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 전공 석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생물 지형학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중 2명 이상 보유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생물 지형학
사회·경제환경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교통기사 중 1명 이상 보유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경제학 해상교통학 양식학

비고

- 1) 분야별 같은 자격의 기사는 1명으로 한다.
- 2)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유사 학과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3) 위 표에서 “관련 분야”란 같은 표의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에 규정된 분야를 말한다
- 4) 환경평가실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5. 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법 제89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86조제1항에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2호의2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9조 제1항제3호	경고			
마.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바.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2	등록취소			
아. 법 제88조에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한 경우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비고

1. 자목 중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해역이용협의서등에 기재한 경우

나. 고의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자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여 통상적인 보완으로는 그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나 주요 보호대상 물 등을 누락한 경우

-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 2) 해역이용협의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보호 동식물, 어업권 등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10.1.12>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증명서(제64조제5항 관련)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증명서	
품명	
검사일자	. . .
유효기간	.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조사	
제조번호	
검사기관	
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해양환경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인] 	

비고

1. 정도검사 증명서는 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부착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은 적절히 조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13.3.24>

검정 증명서(제65조제5항 관련)

검정 증명서	
품명	
검사일자	. . .
유효기간	. . .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5항에 따라 교정을 실시한 검정용품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장관 </p> <p style="text-align: center;"></p>	

비고

1. 검정 증명서는 용기 또는 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교정용품의 부착면을 고려하여 검정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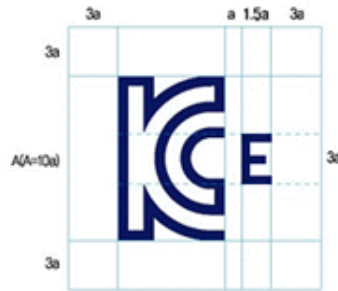
제작회사:	기기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기기고유번호:	수입신고일: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p>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 × 세로 40mm로 한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11.9.29>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약제)의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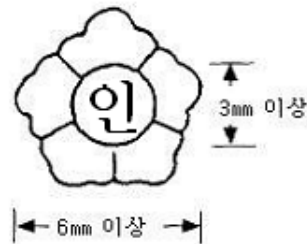


비고

위의 국가통합인증마크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의2] <신설 2011.9.29>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



비고

위의 인증표시 외에 성능시험일자와 성능시험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제73조제3항 관련)

1.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
2. 배수펌프 2대
3. 절단기 10대
4.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
5. 33㎡ 넓이의 사무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통기준

가.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분야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체 보유(사용 및 위탁관리 포함)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에 대한 정도검사 및 검정 대행은 제외하되, 업무대행자가 하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각 분야에서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
- 2)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공통되거나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

다. 기술능력 중 기술직·기능직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기술직

- 가)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기술사
- 나)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업무대행자의 경우 환경측정·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자
-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관련 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성능시험·정도검사 업무대행자의 경우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용존산소 연속 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용존산소·pH) 1대 나. 전자저울(200g 이상, 0.1mg 이하 측정 가능한 것) 1대 다. 기준온도계(0 ~ 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이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는 것)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 안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 가능한 것)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 ~ 1V 범위의 전압을 ±1mV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 안의 온도를 ±1℃ 이내

		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 가능한 것) 1대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 안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kV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kV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카.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절환 가능한 것) 1대 타. 신호기록장치 1대 파.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하. 항온항습실험실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화학적 산소요구량)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질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질소)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인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인)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유기탄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유기탄소)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3. 교정용품 검정 업무대행자의 경우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 설 및 장 비
기체상 표준물질류	기술직 3명, 기능직 1명	가. 가스표준물질 제조장치 1식 나. 가스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2식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식 라. 수분분석기 1식

비고

- 제1호 다목에서 "관련 분야"란 환경·화공·화학·토목·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전기·기계·전자·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는 검사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분야별 기술인력을 다른 지정분야의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 4명 이상이 있을 것

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표의 전공과정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정: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나. 공업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전공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목: 화학·화공·자원·산업·환경·고분자·생물·미생물·해양학·해양환경)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자격: 화공(공업화공)·산업안전·공정관리·안전관리(화공안전)·생산관리·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공학·생물공학)

2. 시험설비 및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 1) 인화점
- 2) 동점도
- 3) 유화율
- 4)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 5) 생물에 대한 독성
- 6) 중량 및 비중
- 7) 색도

나. 유흡착재

- 1) 온도
- 2) 흡착량

- 3) 흡수량
- 4) 진동시험
- 5) 내유성
- 6) 중량
- 7) 강도
- 8) 소각시험
- 9) 동정시험

다. 유결화제

- 1) 인화점
- 2) 동점도
- 3) 겔화율
- 4) 포집율
- 5) 겔화유의 함수율
- 6) 유결화제의 회수성
- 7) 수용성성분의 생분해도
- 8) 생물에 대한 독성
- 9) 소각시험
- 10) 중량 및 비중
- 11) 색도

라. 오일펜스

- 1) 치수검사
- 2) 부유시험
- 3) 인장강도시험
- 4) 기실의 누설시험
- 5) 내유성
- 6) 내후성(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기실의 내압시험

마. 생물정화제제

- 1) 생물에 대한 독성
- 2) 유류분해능 시험
- 3) 호흡률 시험
- 4) 총미생물수 측정시험
- 5) 단백질농도
- 6) 영양염농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설비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다. 인력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삭제 <2013.6.1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18. 5. 1.>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가. 성능시험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27,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408,000
나. 정도검사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18,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1,000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98,000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98,000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907,000
다. 검정	표준가스 검정	42,000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자재·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오일펜스	232,000	원/1회	2,000	원/20m
유처리제	1,990,000	원/1회	2,000	원/18 ℓ
유흡착재	413,000	원/1회	2,000	원/10kg
유겔화제	1,687,000	원/1회	2,000	원/10kg
생물정화제제	2,867,000	원/1회	2,000	원/18 ℓ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

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개정 2015.1.8.>

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삭제 <2011.9.29>			
2. 해양환경개선부과금 부과실적,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해양경찰청장
3. 해양시설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4. 삭제 <2011.9.29>			
5.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폐기물해양배출실적	연 1회	다음 해 2월 말 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6. 폐기물위탁자의 신고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 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7.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및 취소 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 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8. 해역이용협의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9.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10. 평가대행자의 등록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 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8.>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9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법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청분야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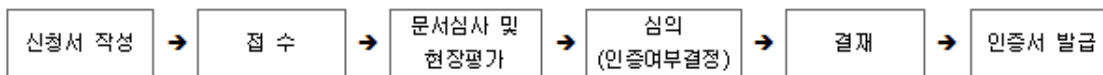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경도관리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법인 주소:
5. 사업장 소재지:
6. 유효기간:
7. 인증분야 및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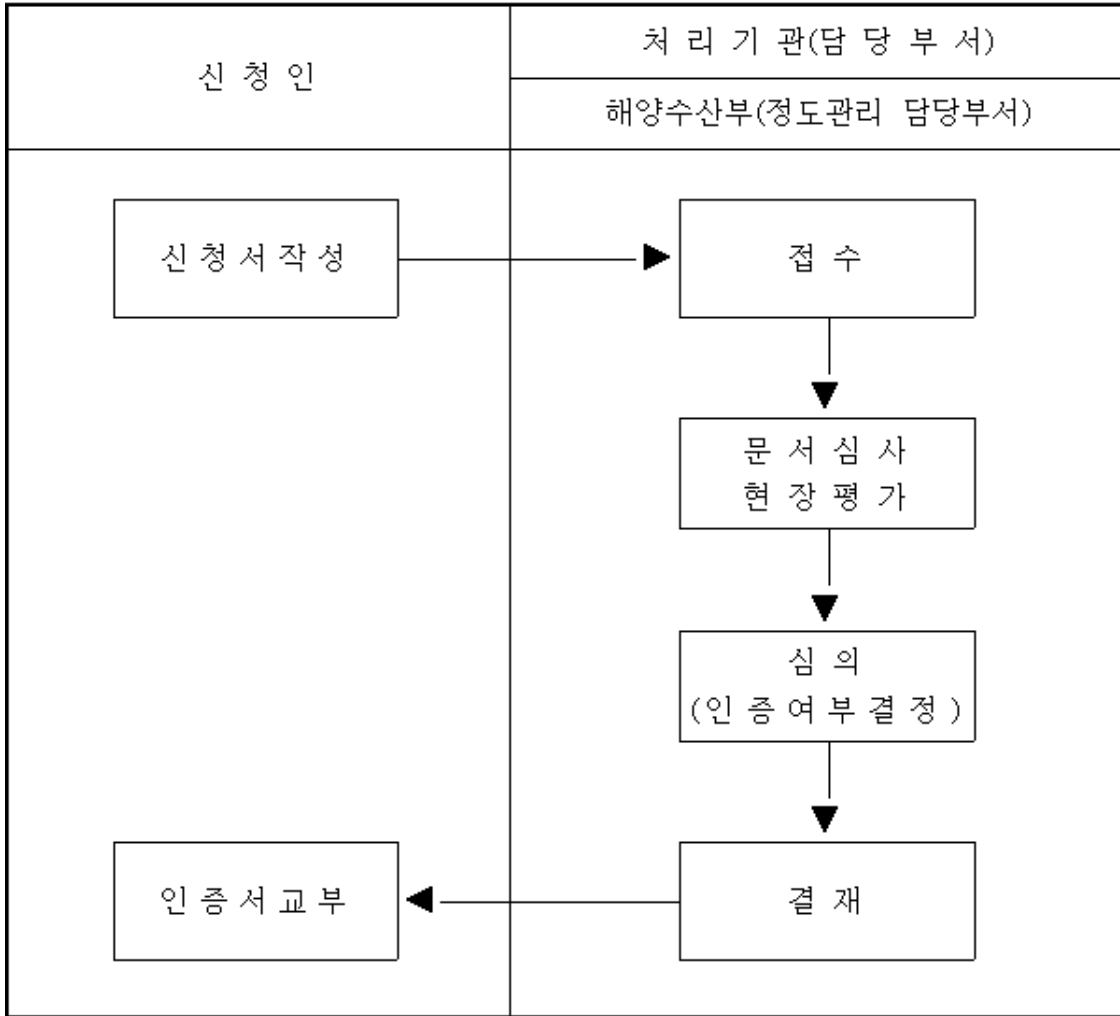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8.>

회계연도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③ 국고계과		
	주소					
④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⑥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⑦ 납기 후 금액			원			
기금출납명령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 영수필통지서(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③ 국고계과		
	주소					
④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⑥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		
⑦ 납기 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		
()은행()지점 ()우체국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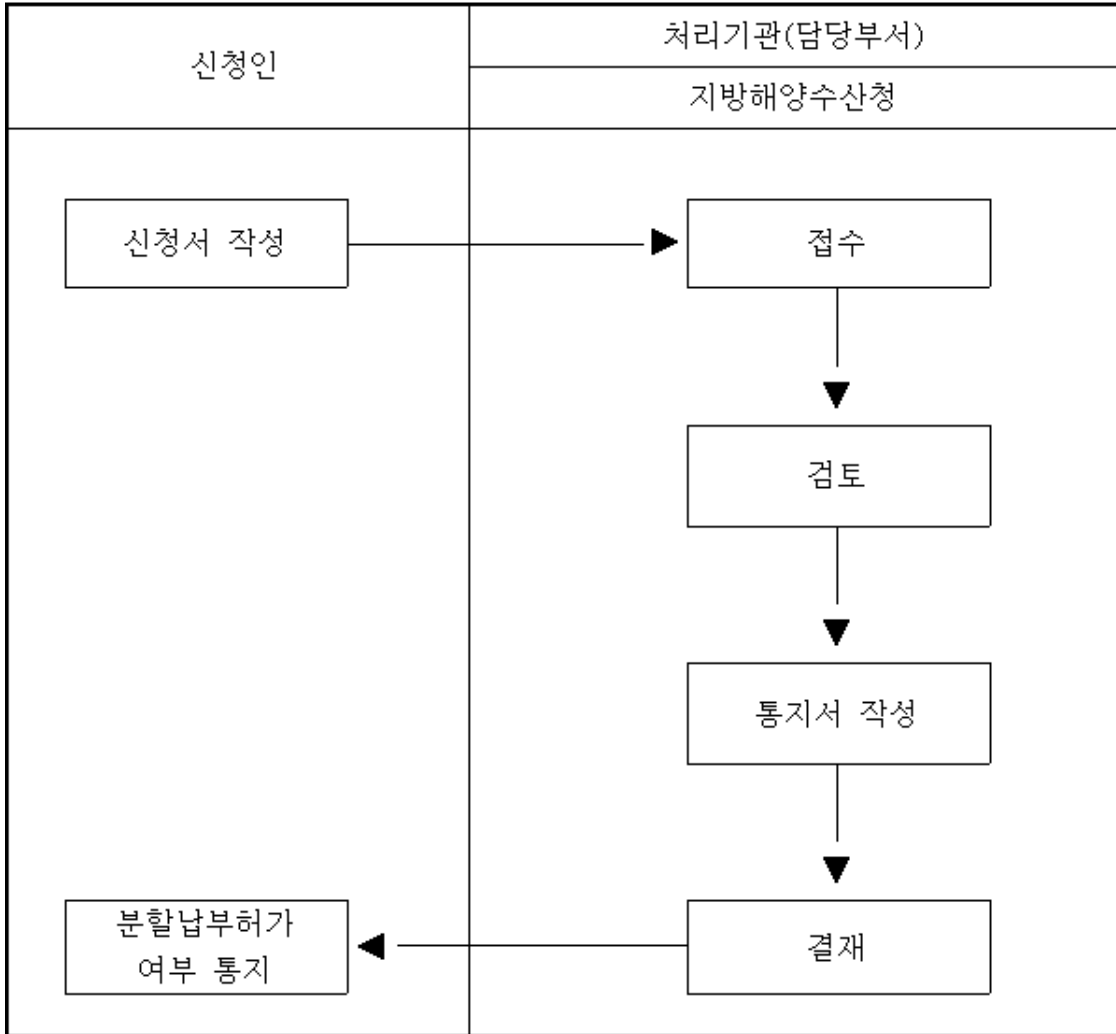
회계연도	납부 고지서겸영수증(납입자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③ 국고계과		
	주소					
④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⑥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		
⑦ 납기 후 금액			원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지점 ()우체국	영수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서(수납은행보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③ 국고계과		
	주소					
④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⑥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⑦ 납기 후 금액			원			
()은행()지점 ()우체국 ()출						

297mm × 210m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8.>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부과기간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부과금액	⑧ 분할납부금액	⑨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신청내역

⑩ 분할 횟수	⑪ 납부기한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⑬ 이자금액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1차				
2차				
3차				
합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2. 23.>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또는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조정부과(또는 환급) 내역

- 부담금:
- 조정부과(또는 환급) 금액:
- 조정부과(또는 환급) 결정일:
- 수납(또는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조정부과(또는 환급) 사유:
-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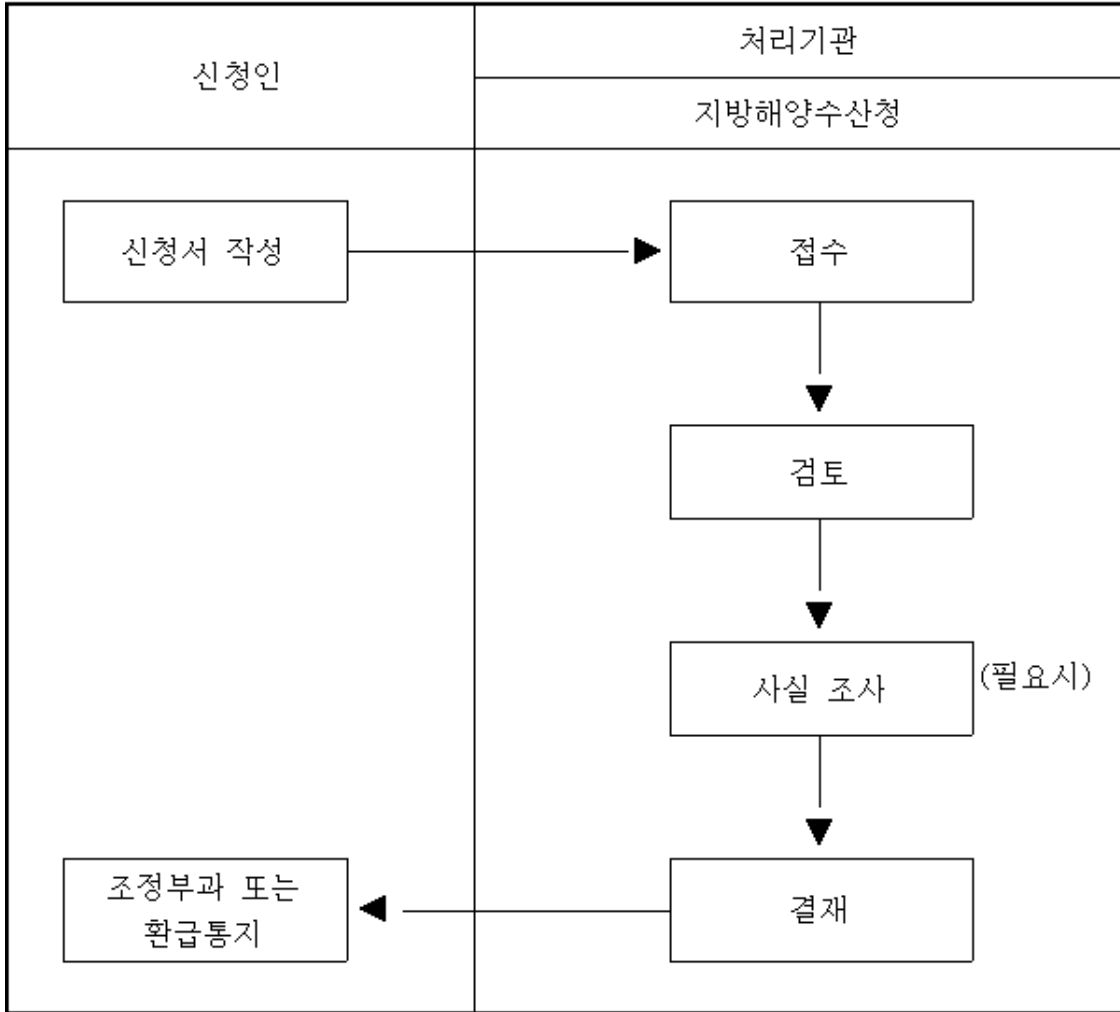
발신명 익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택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관리번호		독촉장		
① 성명		② 상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납부기한		
⑤ 주소(사업장)				
⑦ 체 납 액	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비고
<p>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p>1. 위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p> <p>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p> <p>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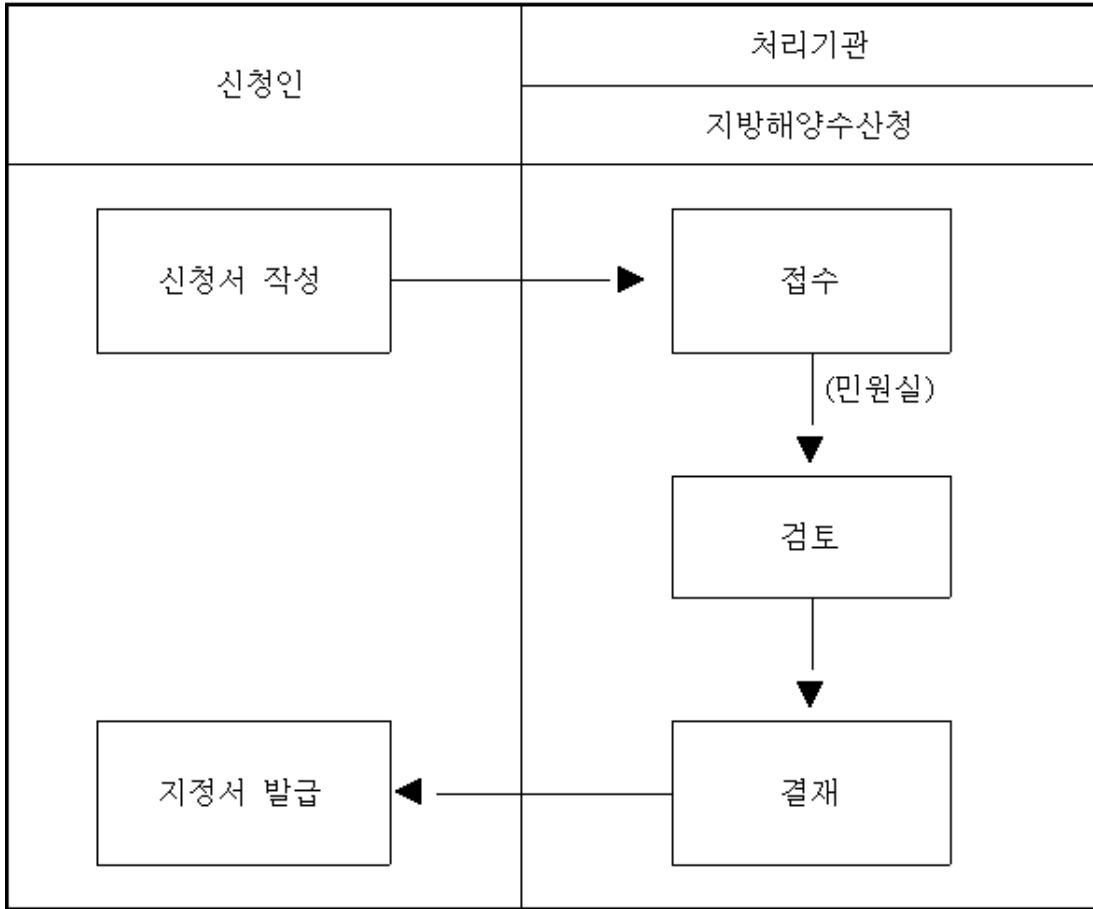
(앞쪽)

폐기물배출해역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기물의 종류, 주 성분 및 형태	⑤ 종류	⑥ 주성분	⑦ 형태
	해양배출계획	⑧ 연간배출량	⑨ 1회 배출량	⑩ 배출주기
		m ³		m ³
	⑪ 신청해역			
	⑫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⑬ 배출방법				
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13조제1항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제15조제1항 폐기물배출해역을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 지정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를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 지정신청 시 가. 변경사항이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 증가인 경우 1)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나. 변경사항이 지정기간 또는 폐기물 종류인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비고	1. 신규 지정신청 시 처리기간: 25일 2. 변경지정 신청 시 처리기간 가. 지정해역, 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 20일 나. 그 밖의 경우: 3일 3. "⑩ 신청해역"란은 제12조제1항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지정번호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제 호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지정내용	⑤ 지정해역(구역)		
	⑥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배출 허용량	(m ³ /년) 이하	
	⑩ 배출 방법		
	⑪ 지정 조건		
<p>「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p>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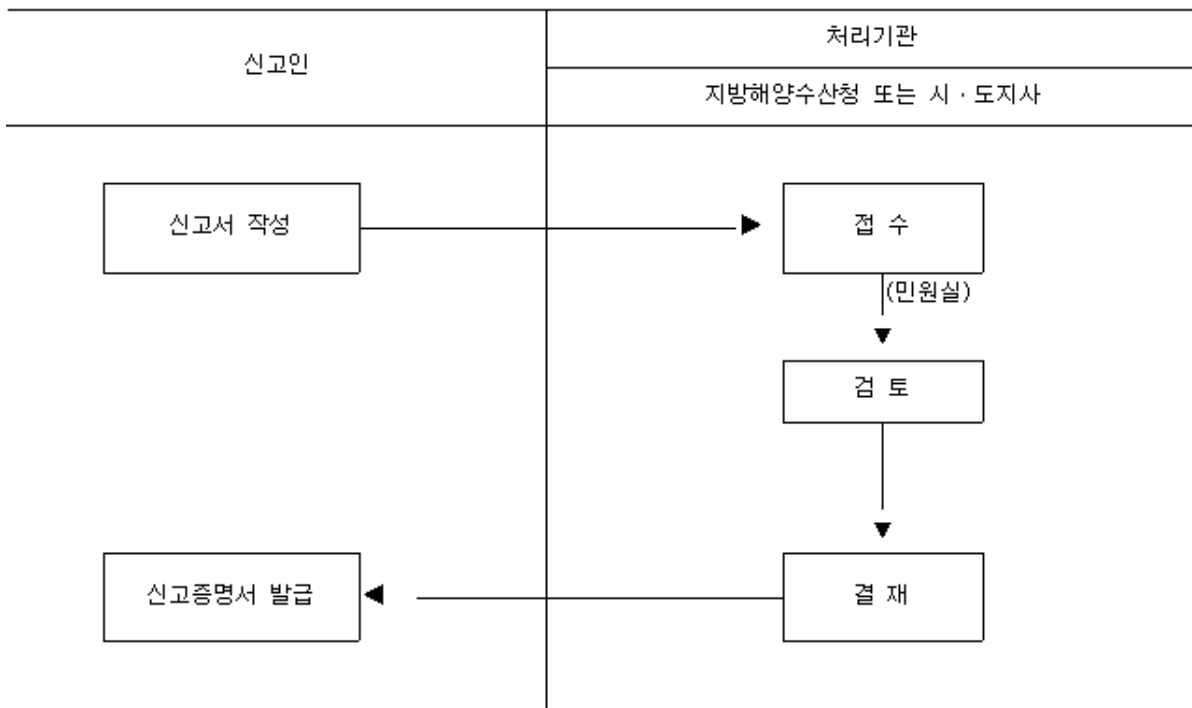
(지정조건)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1.9.29>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 신고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 연월일	
신고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상호명칭		⑦ 소재지	
⑧ 설치위치			
⑨ 해양시설의 용도			
⑩ 해양시설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⑪ 종류	⑫ 수량	⑬ 비치장소	
신고변경사항			
년 월 일	변경사유	기록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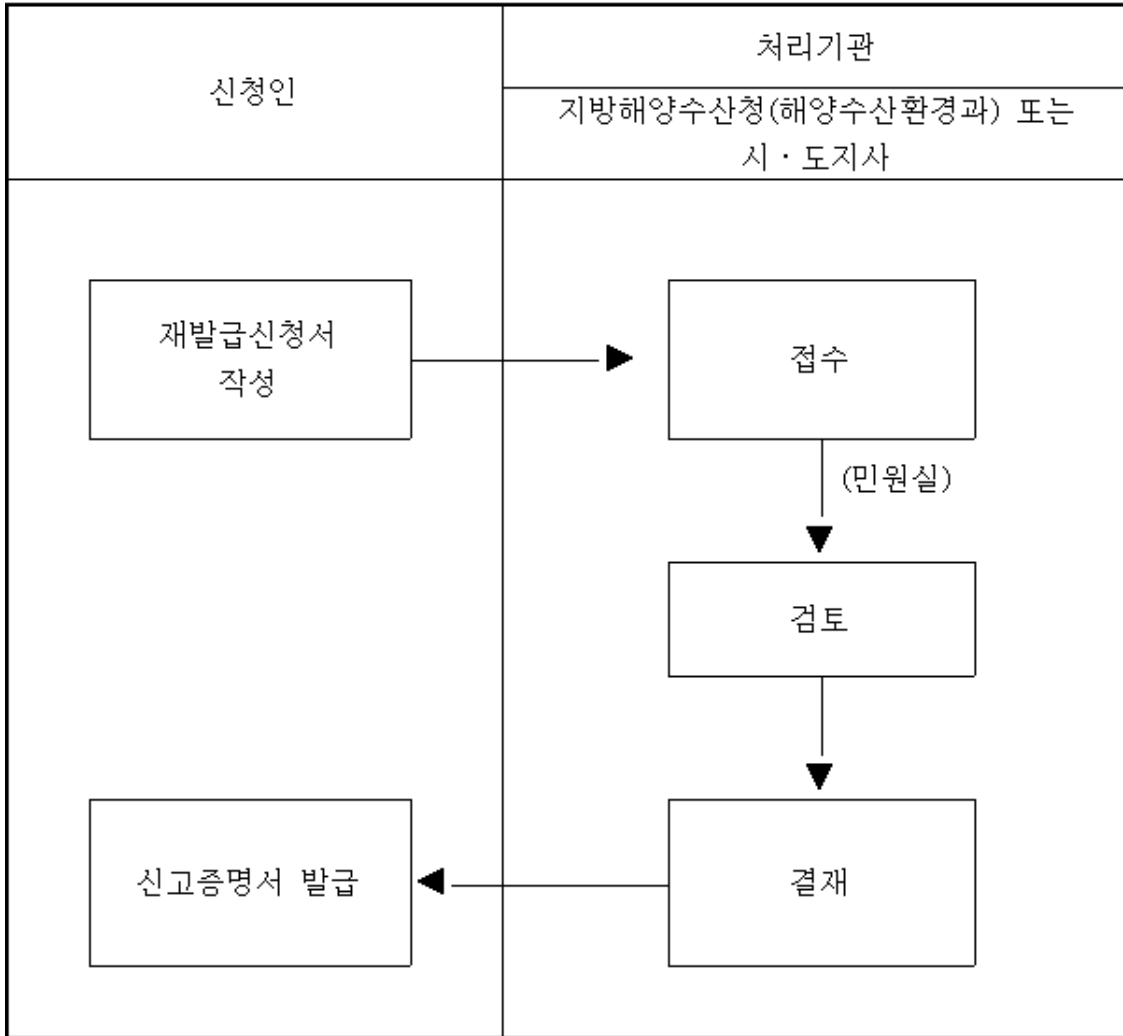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뒤쪽)

해양시설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해양시설의 명칭:

2. 해양시설의 위치:

3. 해양시설의 형식:

4. 기간: 부터 까지

210mm × 297mm[인쇄용지(특) 100g/㎡]

(제3쪽)

비고: 다음 표에 적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적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 서명란에 기입할 것.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번호

부호	번호	작업의 내용
(A)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하역
	1	하역을 시작한 시간
	2	기름(유해액체물질)을 하역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3	하역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세제곱미터에 의한다)
(B)	4	하역을 마친 시간
	1	선박에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선적
	2	선적을 시작한 시간
	3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적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C)	4	선적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선적을 마친 시간
(D)	1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처리
	2	해양시설 안에서 생긴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3	처리방법
	1	
	2	사고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예외적인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배출
	3	배출 시간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양(입방미터에 의한다) 배출 상황 및 이유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을 발생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생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한다.
3. ②란의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4. ④란의 운반자 및 처리자는 실제 폐기물 운반·처리를 담당한 사업자명을 적으며 처리방법은 중간처리 방법(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을 적는다.
5. ⑤란의 처리잔량은 ②란(발생현황)에서 ③란(자가처리현황)과 ④란(위탁처리현황)을 제외한 량을 적는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6. 28.>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운반	폐기물 종류	배출예정량(m ³)	운반배출능력(m ³ /년)
폐기물	적재지(주된 적재지)	배출지정 해역	운반항해로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m ³)
------	----	-----------------------

운반선 (주운반선 / 부운반선)	선박명 /	선박번호 /	선적항 /
	총톤수 /	선질 /	항해구역 /
	배출관련 설비 /	선박자동식별장치 /	배출정보 저장장치 /
	그 밖의 주요설비 /		

운반차량	차량번호	용량
------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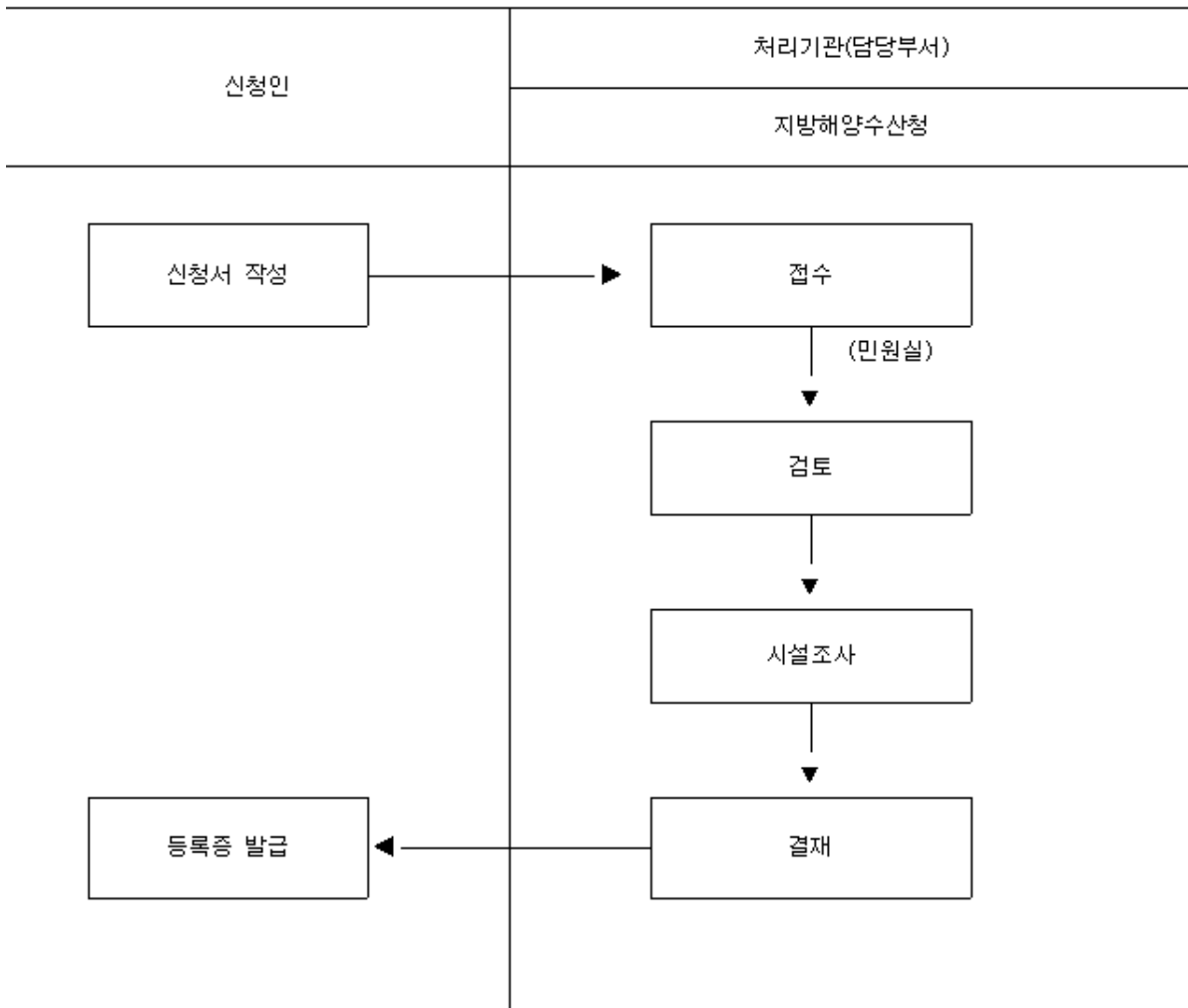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등록번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등록연월일
제 호				. .
등록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무소)	(전화:)		
운반 폐기물	⑤ 폐기물종류			
	⑥ 배출허용량	(m ³ /년)이하		
	⑦ 적재지	(주된 적재지:)		
	⑧ 배출지정해역			
	⑨ 운반항행로			
저장 시설	⑩ 구조	⑪ 저장능력	m ³	
	구분	주문반선	소운반선	
폐기물 운반선	⑫ 선박명			
	⑬ 선박번호			
	⑭ 선적항			
	⑮ 총톤수			
	⑯ 선질			
	⑰ 항행구역			
	⑱ 배출관련설비			
	⑲ 선박자동식별장치			
	⑳ 배출정보저장장치			
	㉑ 그 밖의 주요설비			
	운반 차량	㉒ 차량번호	㉓ 용량	m ³
<p>「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㉔</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쪽)

제 호

유창청소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제 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1.8.>

회사명				
우편번호/ 과명/	주소/ 과장/	담당/	전화/ 이메일/	팩스/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해양배출 실 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예정부담금	비고
1	분뇨			
2	가축분뇨			
3	폐수			
4	분뇨처리오니			
5	폐수처리오니			
6	하수처리오니			
7	원료동식물폐기물			
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9	수산가공잔재물			
10	수저준설토사			
붙임: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 1부, 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div>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수탁									해양배출						
일시	위탁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 종류	발생 공정	성상	수량 (m ³)	수탁 단가 (원/m ³)	저장 장소	선적 일시	선적 장소	폐기 물 종류	성상	수량 (m ³)	출항 일시	배출 일시

364mm × 257mm(산)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8.>

업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해양경찰서장				발신: [인]				
제목: (년도 분기) 오염물질의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								
오염물질 수거·처리 실적(기간: ~)								
오염물질 수거 내역					오염물질 처리 내역			
① 일자	② 발급 번호	③ 종류	④ 위탁 업체명 (선명)	⑤ 수거량 (톤)	⑥ 처리 방법	⑦ 처리량 (톤)	⑧ 처리 업체명	⑨ 보관량 (톤)
계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오염물질의 수거일자 기재 ②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번호 기재 ③ 오염물질의 종류(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재 ④ 오염물질 발생업체(선박)명 기재 ⑤ 수거 오염물질량 기재 ⑥ 오염물질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⑦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량 기재 ⑧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업체명 기재 ⑨ 수거(잔재) 오염물질 미처리량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폐기물 인계·인수서(1)

1	행정기관제출용		<백 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m ³ (kg)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㉑ 출항지			
	㉒ 배출해역			
㉓ 확인	위탁자		운반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mm × 297mm(노카본지 50g/m²)

(뒤쪽)

<작성방법>

1. 작성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위탁·육상운반 및 해상에 배출·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위탁자·운반자 및 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위탁·운반 및 배출처리시마다 상대방의 기재내용과 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직접 확인한 후 자기가 적어야 할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3. 항목별 기재방법

가. ①일련번호: 위탁자별로 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②·⑪ 및 ⑩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를 적는다.

다. ③·⑩·⑰ 및 ④·⑫·⑲업소명 및 주소: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탁하는 사업장의 업소명을 적고, 주소란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까지 적는다.

라. ⑤위탁장소: 폐기물을 위탁할 당시에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다.

마. ⑥ 및 ⑦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실제로 위탁하는 양을 명확히 적는다.

바. ⑧폐기물성상: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사. ⑨배출업자: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업체명을 적는다.

아. ⑮수집·운반차량증 번호: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를 적는다.

자. ⑳저장시설: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을 적는다. 다만, 운반선에 직접 적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차. ㉑출항지: 폐기물운반선이 폐기물을 싣고 출항하는 항명을 적는다.

카. ㉒배출해역: 폐기물운반선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해역을 적는다.

타. ㉓확인: 위탁자·운반자 및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운반·처리시마다 기재사항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별지 제41호서식]

폐기물 인계·인수서(2)

1	위탁자보관용	<녹 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m ³ (kg)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운반 차량증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㉑ 출항지					
	㉒ 배출해역					
⑳ 확인	위탁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mm × 297mm(노카본지 50g/m²)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인계·인수서(3)

1 배출업자보관용		<노란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m ³ (kg)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㉑ 출항지					
	㉒ 배출해역					
㉓ 확인인	위탁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mm × 297mm(노카본지 5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7. 28.>

- [] 폐기물해양배출업
- [] 폐기물해양수거업
-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해양오염방제업
- [] 유창청소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1부,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1부(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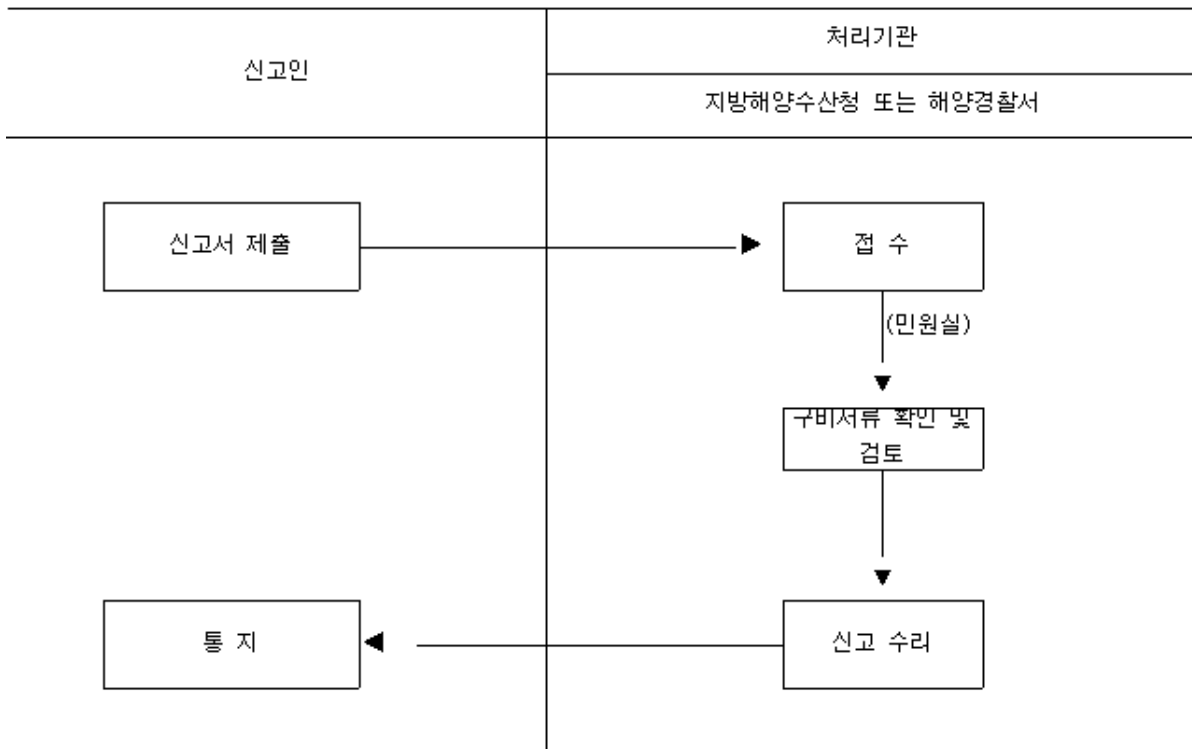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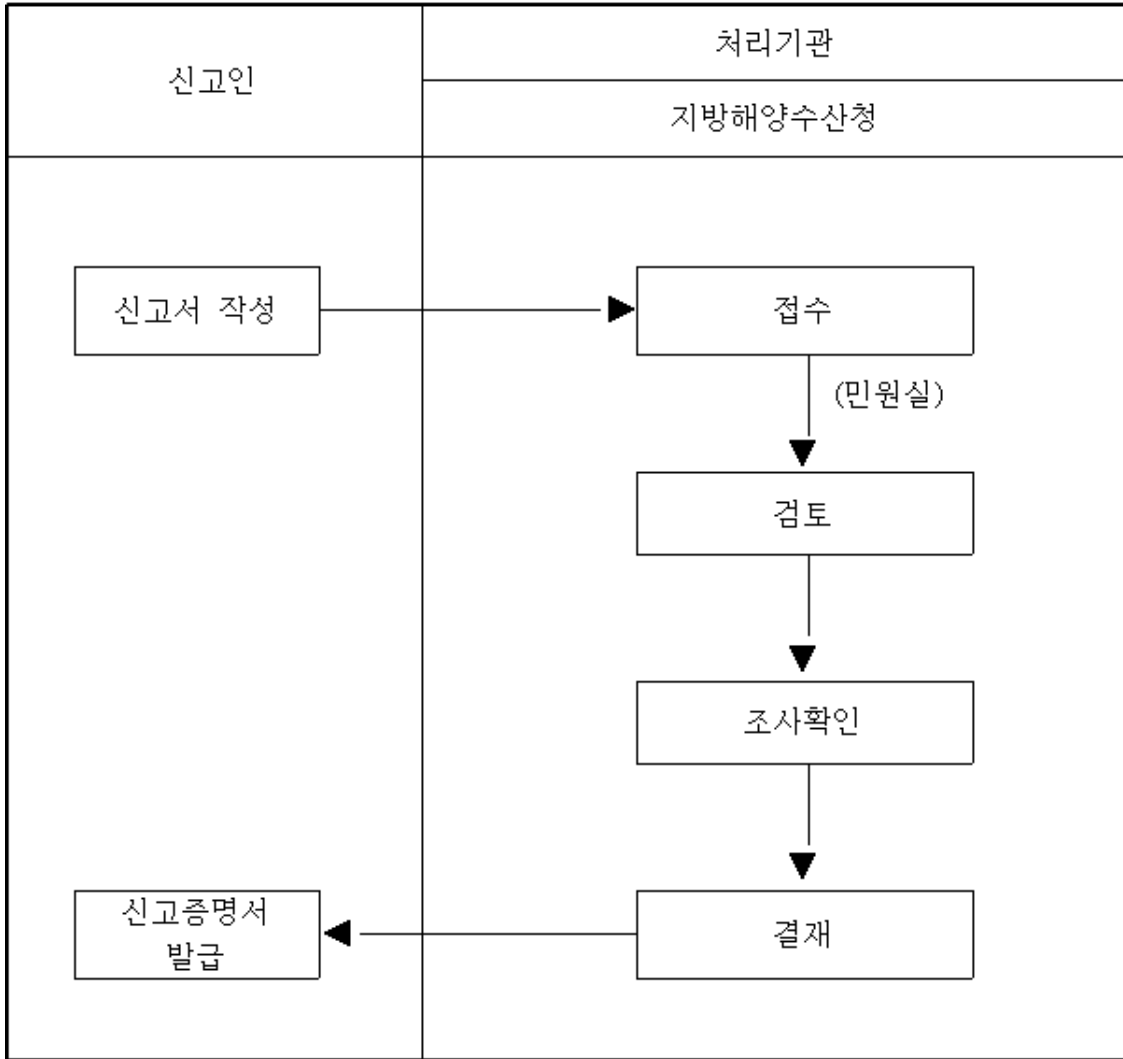
(앞쪽)

폐기물 위탁·처리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비고란참조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업종
신고내용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월평균 처리량(m ³)	⑩ 처리 업체명
	⑪ 처리 기간	⑫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m ³)
	⑬ 폐기물의 오염도(mg/l)	⑭ 종류
		COD
		BOD
		TN
		TP
		함수율(%)
		시험방법
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45조제1항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제45조제5항 폐기물 위탁처리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규 위탁처리 신고 시 가.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함) 다. 삭제 <2013.6.19> 라. ⑩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 1부. 마.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2. 위탁처리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비고	1. 신규 위탁처리 신고 시 처리기간: 15일	
	2. 위탁처리 변경신고 시 처리기간 가.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 15일 나. 그 밖의 경우: 5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44호의2서식] <신설 2011.12.29>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제출자	① 상호(명칭)
	② 업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육상 처리 가능 여부 검토 결과	⑥ 해양배출의 사유
	⑦ 향후 육상처리계획
검토서 공개 동의 여부	⑧ 동의합니다.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작성요령>	
⑥의 경우에는 육상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를 적습니다.	
⑦의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외의 육상처리계획을 적습니다.	
⑧의 경우에는 이 검토서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신고번호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제 호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업종		
위탁처리내용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폐기물 발생공정	⑩ 저장시설종류 및 저장능력(m³)	⑪ 월평균 처리량(m³)	⑫ 처리 업체명	⑬ 처리 기간
⑭ 발급조건:							
<p>「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인</p>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의 2서식] <개정 2017. 7. 28.>

침몰선박 정보 현황

1. 선박개요					
선박번호		선 명		응 도	
선체재질		총톤수		재확톤수	
길 이		너 비		깊 이	
소유자(운항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FAX:)				
2. 사고개요					
침몰일시		침몰원인		침몰수심	
침몰장소 (경위도)					
사고개요 (구체적 기재)					
피해사항	선박피해 (손상구획 및 범위)				
	오염피해 (오염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인명피해 (사망·실종·부상 등)				
3. 화물 및 연료유 정보					
화물 종류			화물 적재량(침몰 시)		
연료유 종류			연료유량(침몰 시)		
4. 기타(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미확인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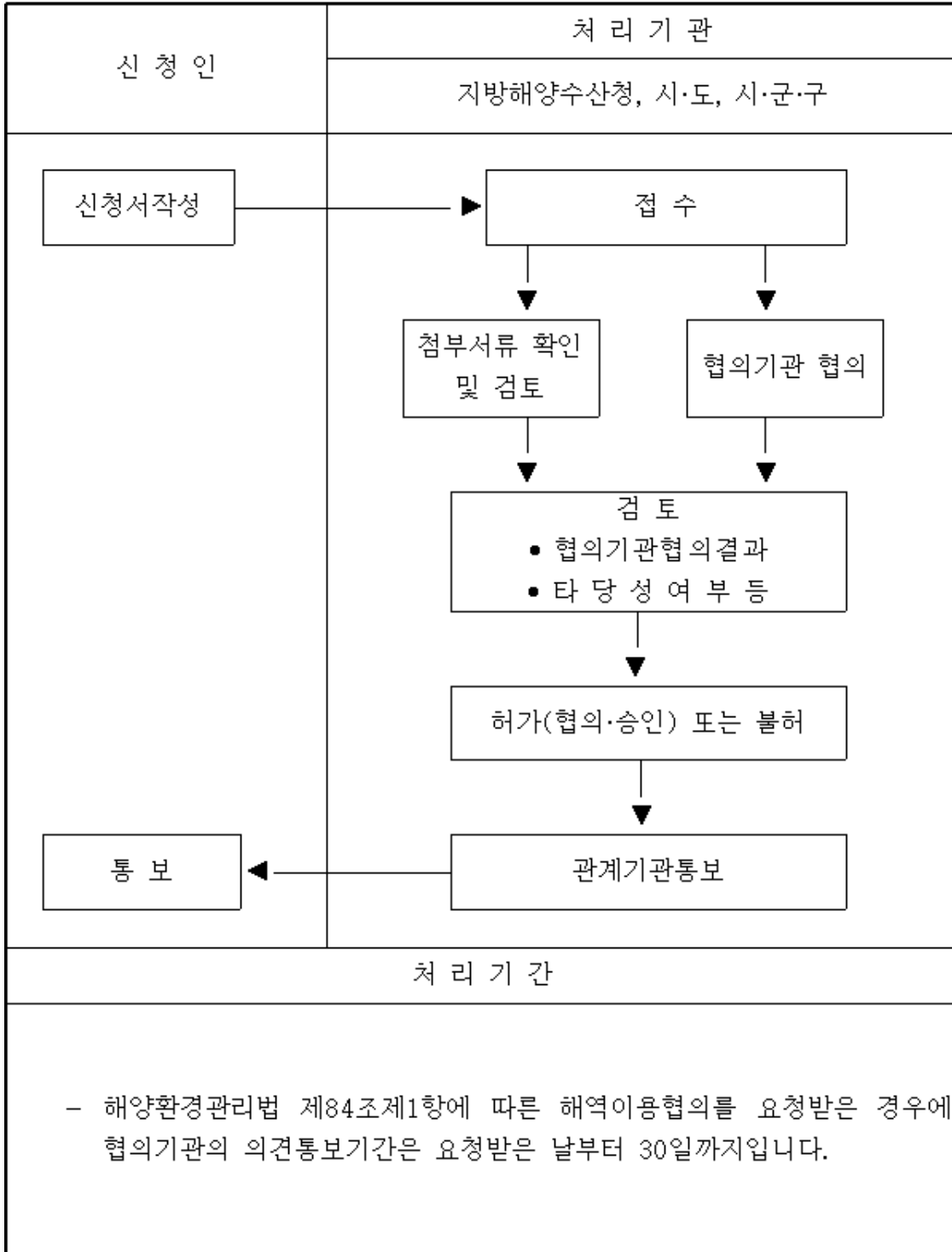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15.1.8.> (앞 쪽)

해역이용협의서		<input type="checkbox"/> 어업면허 신청 <input type="checkbox"/>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전화번호
	③주소			
해역이용협약에 관한 사항(※ ⑤협의의견 회신일은 면허·승인기관이 작성하며, 어업면허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내용 중 변경 전 란만 작성합니다)				
④면허·승인기관				
⑤허가(승인)번호		⑥허가(승인)연월일		
⑦해역이용협의기관		⑧협의의견회신일		
⑨신청해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⑩면적	㎡	㎡	
	⑪목적			
	⑫기간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어업면허 신청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해역이 표시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신청: 신청해역이 표시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7호서식]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부					
① 사업명					
② 사업장위치					
③ 사업자					
④ 처리기관의 장					
⑤ 공람장소		⑥ 공람 기간			
일련 번호	공람일	공람자			비 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람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5.1.8.>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업자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평가 대행자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처분기관의 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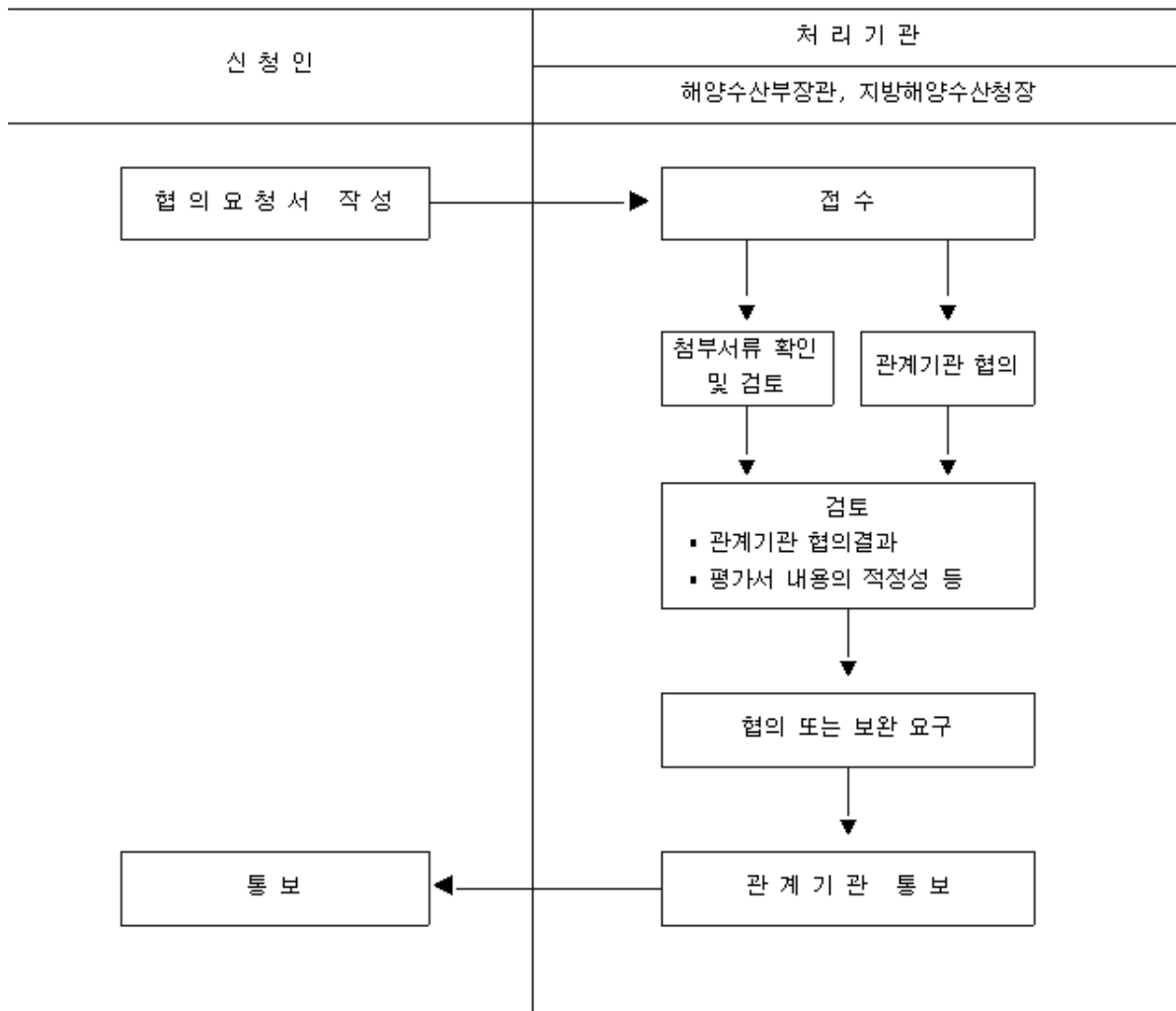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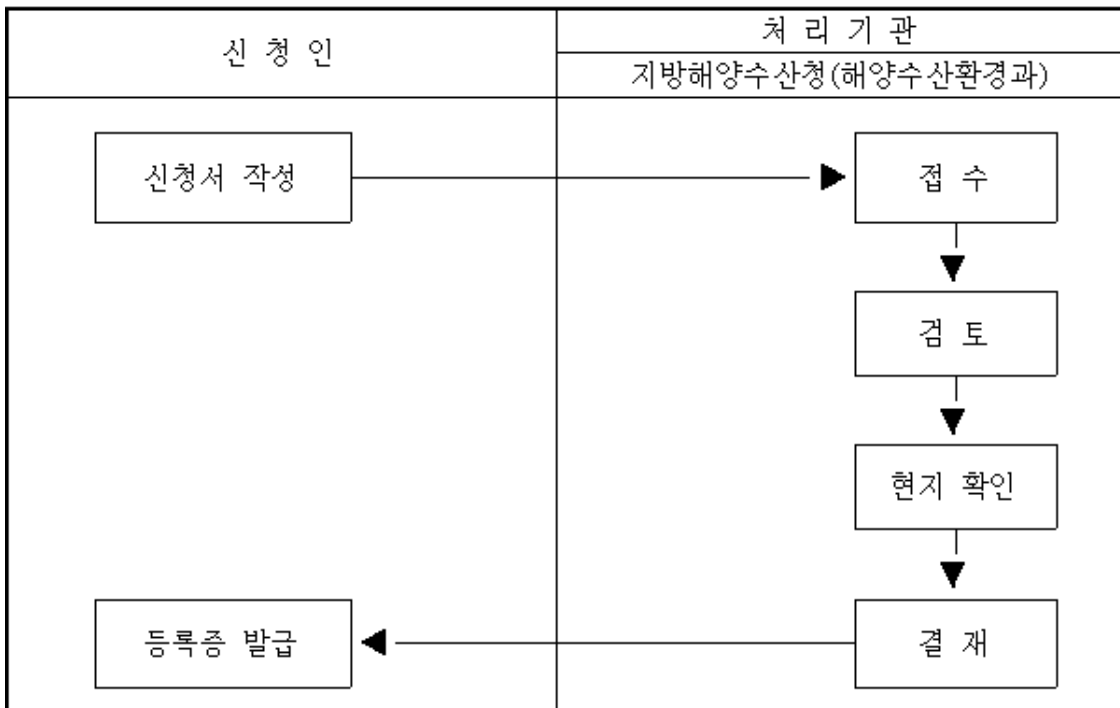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1. 등록 시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1부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2. 변경등록 시 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형자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15.1.8.>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행업소명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대행 실적

사업자	사업장위치	사업규모	대행비용 (백만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 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에 따라 년도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앞쪽)

제 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1. 기관(업체) 명칭

2.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3.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평가서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5.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6. 기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3호서식]

해역이용협의등의 협의내용 사후관리결과 통보서 (기관명:)															
① 일 련 번 호	② 사 업 명	③ 소재 지	④ 사업 시행자	⑤ 협의 기관	⑥ 협의내용 이행확인 기관	⑦ 조사 일자	⑧ 협의 항목 수	⑨ 조사확인내용				이행조치요청			⑬ 비고
								조사 항목 수	이행 항목 수	현지 지도 항목 수	그 밖의 항목수	⑩ 요청 일자	⑪ 요청 내용	⑫ 조치 결과	

※ 작성방법

⑦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⑩란에는 이행확인 대상사업장의 평가협의 항목수를 적습니다(⑨조사확인내용 항목수의 합과 일치되도록 작성).

⑪란에는 해당 연도 중 이행조치 요청일자를 각각 적습니다(공사일시중지 요청 포함).

⑫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란에는 미조치시의 사유 및 조치계획 등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2.11.29>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년도)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성명			전화	
사업자 주소				
협의기관			처분기관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사업계획 승인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공정율(%)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년)		
	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가)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나) 해역이용협의등의 협의 또는 평가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등(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가. 해역이용협의서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나.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해역이용협의서등						협의서등 (협의의견 포함) 제시 환경조사 계획		해양환경영향 조 사결과			검토 결과 (원인 분석 포함)	조치 사항
	해양환경현황			해양환경 영향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 지점	조사 주기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해양 물리													
해양 화학													
해양 지질													
해양 퇴적물													
그밖의 항목													

(제3쪽)

4.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가. 해역이용협의서등에서 제시된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해양퇴적물 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가. 해역이용협의서등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해양지형·지질,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소음·진동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다.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율(%)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6.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조사일시	처분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7.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해역이용협의서등의 환경현황 예측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기재합니다.

(제4쪽)

8. 부록

가.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1) 해양환경영향조사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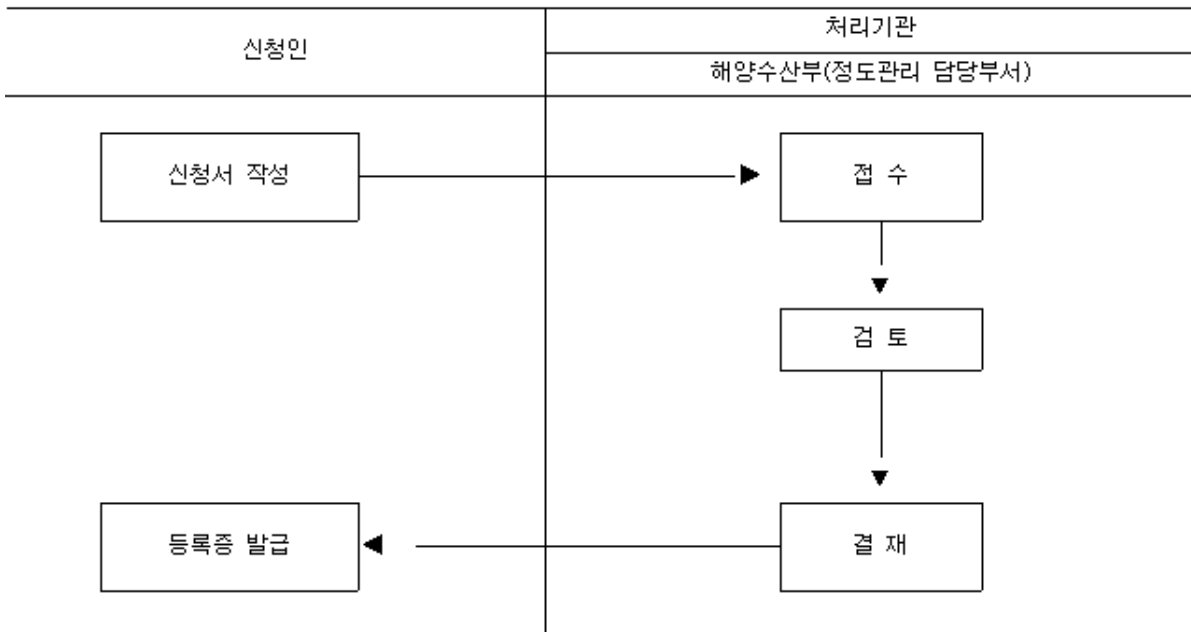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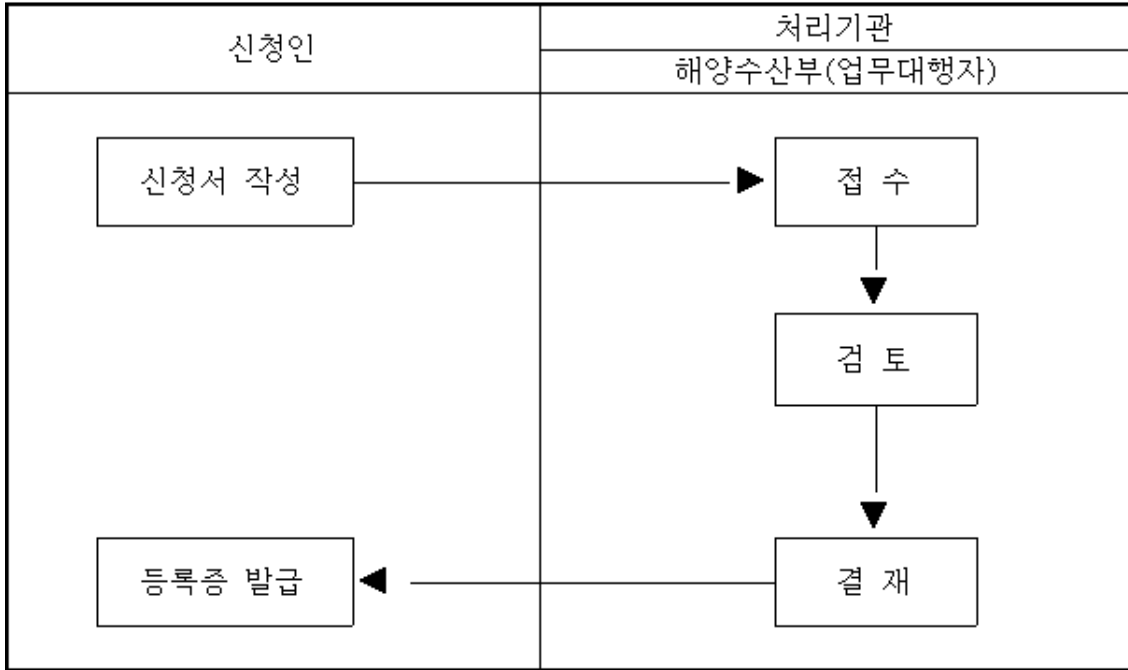
처 리 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개정201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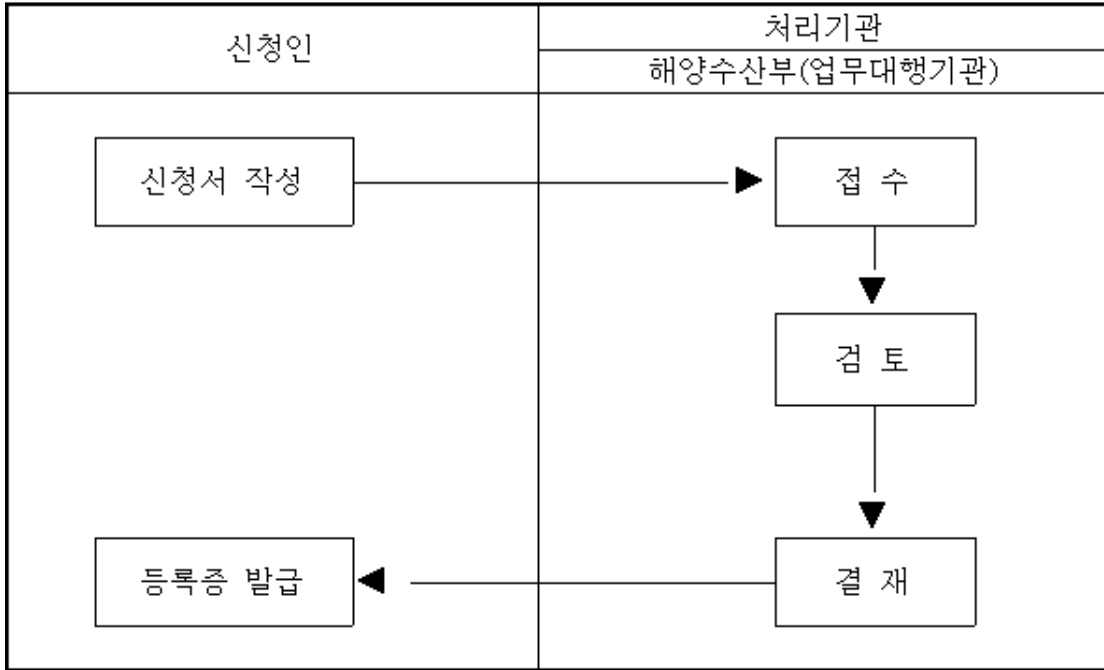
(앞쪽)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해양환경측정기기 교정가스 <input type="checkbox"/> 해양환경측정기기 교정용액							15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분	신청구분	규격			수량			
교 정 가 스	<input type="checkbox"/> 검정				() 병 () 항목			
	번호	용기 번호	가스 종류	용기 용량(L)	총진압력 (Pa)	제조일	표시 농도	교정대상 분석기
	첨부: 교정신청 교정가스가 충전된 용기, 자체성적서 (검정서) 1부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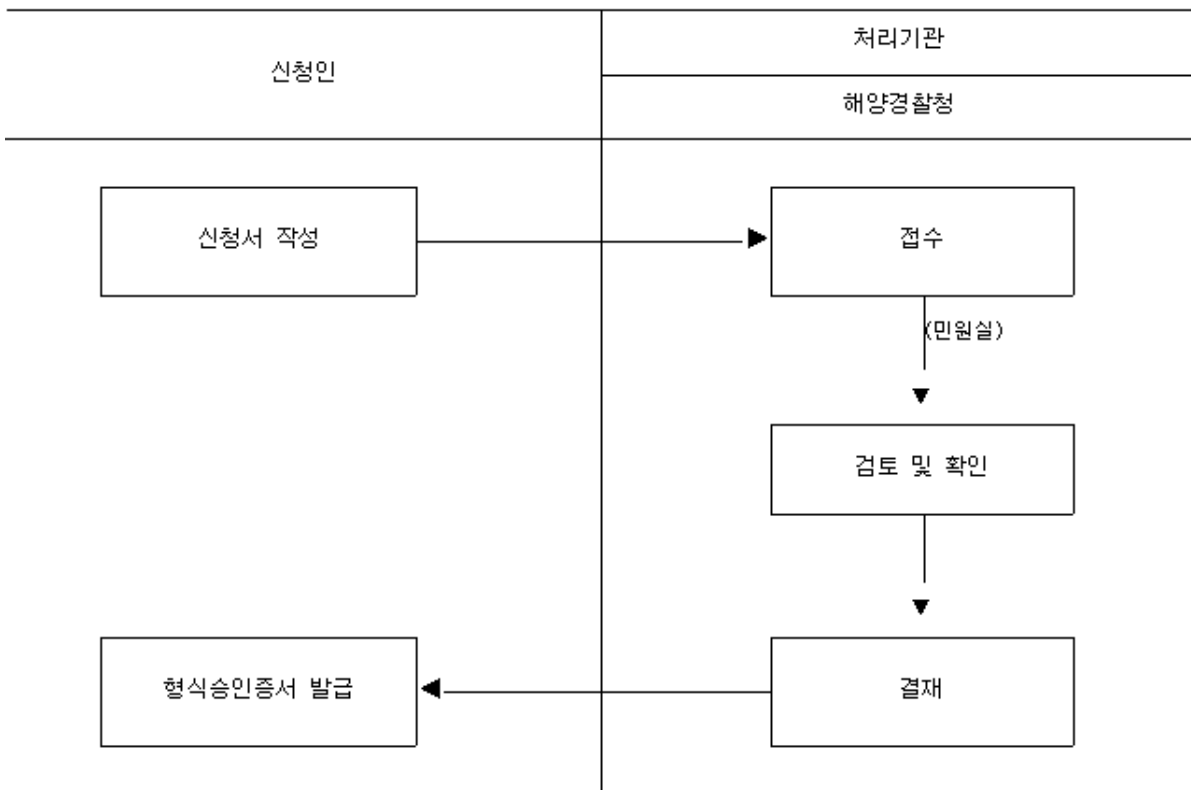
(뒤쪽)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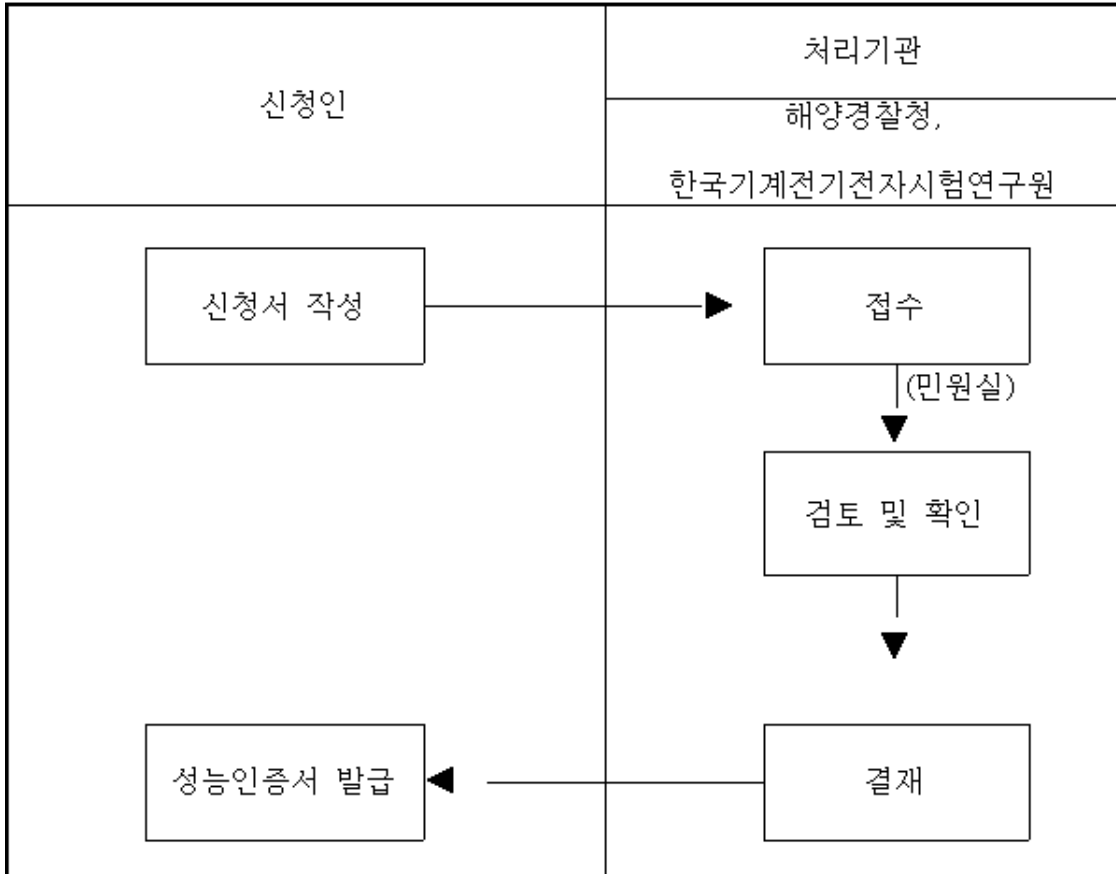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개정2013.3.24>

(앞쪽)

승인번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제 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승 인 내 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기기명칭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최대:
	⑫ 최소눈금(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승인조건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수산부장관 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형식승인변경>

(뒤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거	확인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 쪽)

제 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1. 주된 영업소: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3. 자재·약제의 품명:
4. 자재·약제의 형식 및 규격:
5.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성적서

번호:

발급연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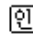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형식승인의 변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거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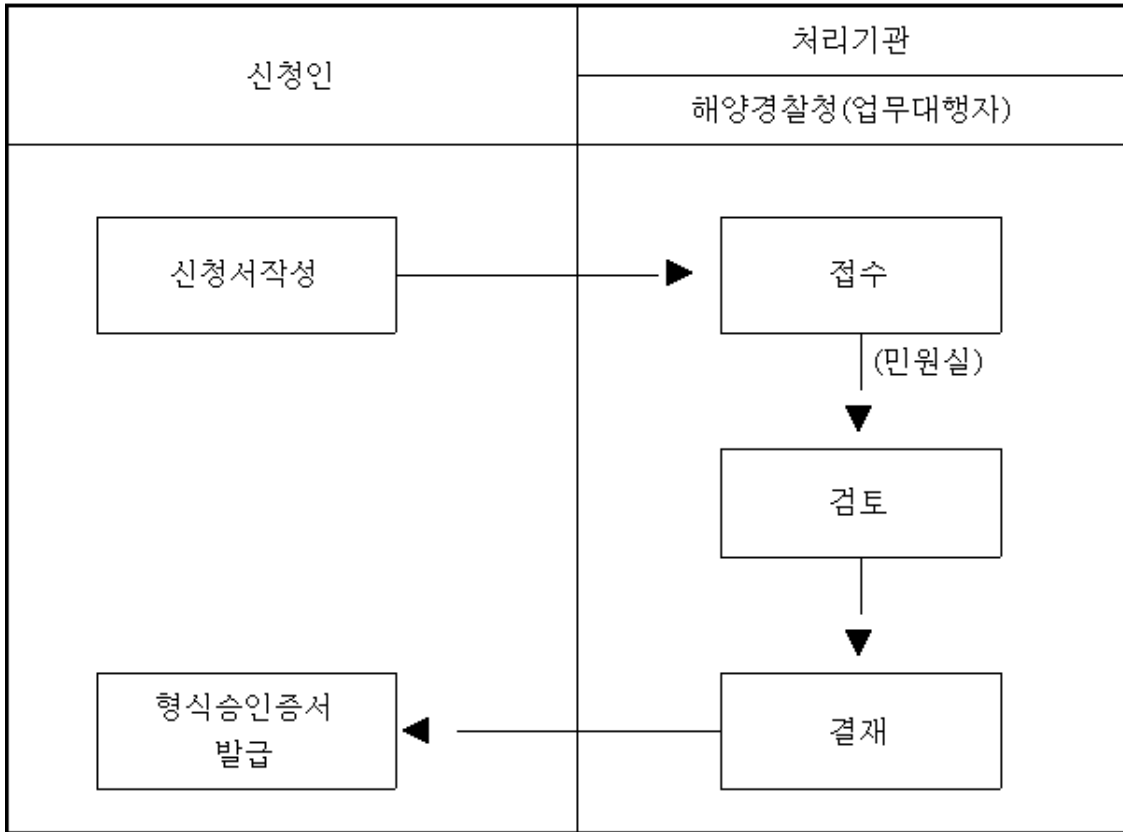
[별지 제60호의2서식] <개정 2017. 7. 28.>

성능인증번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악제 성능인증서			
제 호					
① 상호(사업장명칭)		한글		영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⑤ 사업장 소재지		한글			
		영문			
인증 내용	⑥ 제작사			⑦제작국	
	⑧ 자재·악제의 종류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⑪ 성능인증 성적서		발급기관		발급연월일	
		발급번호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청장 </p>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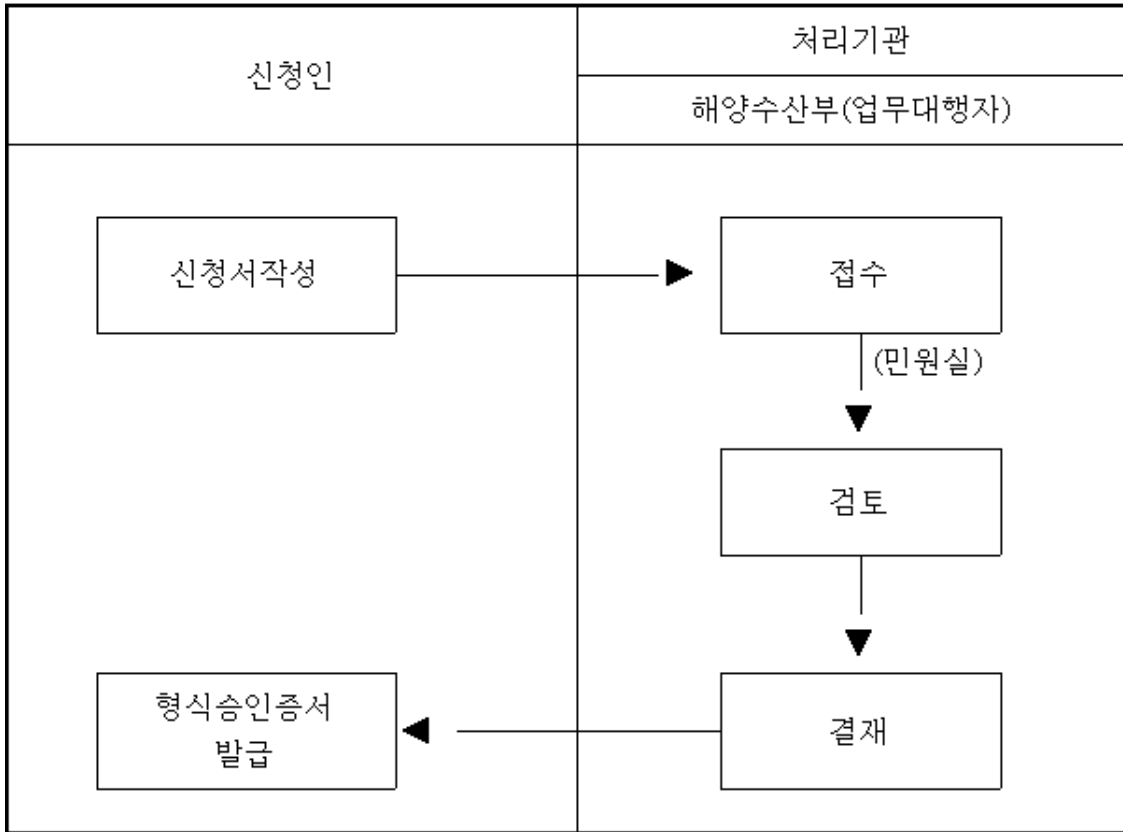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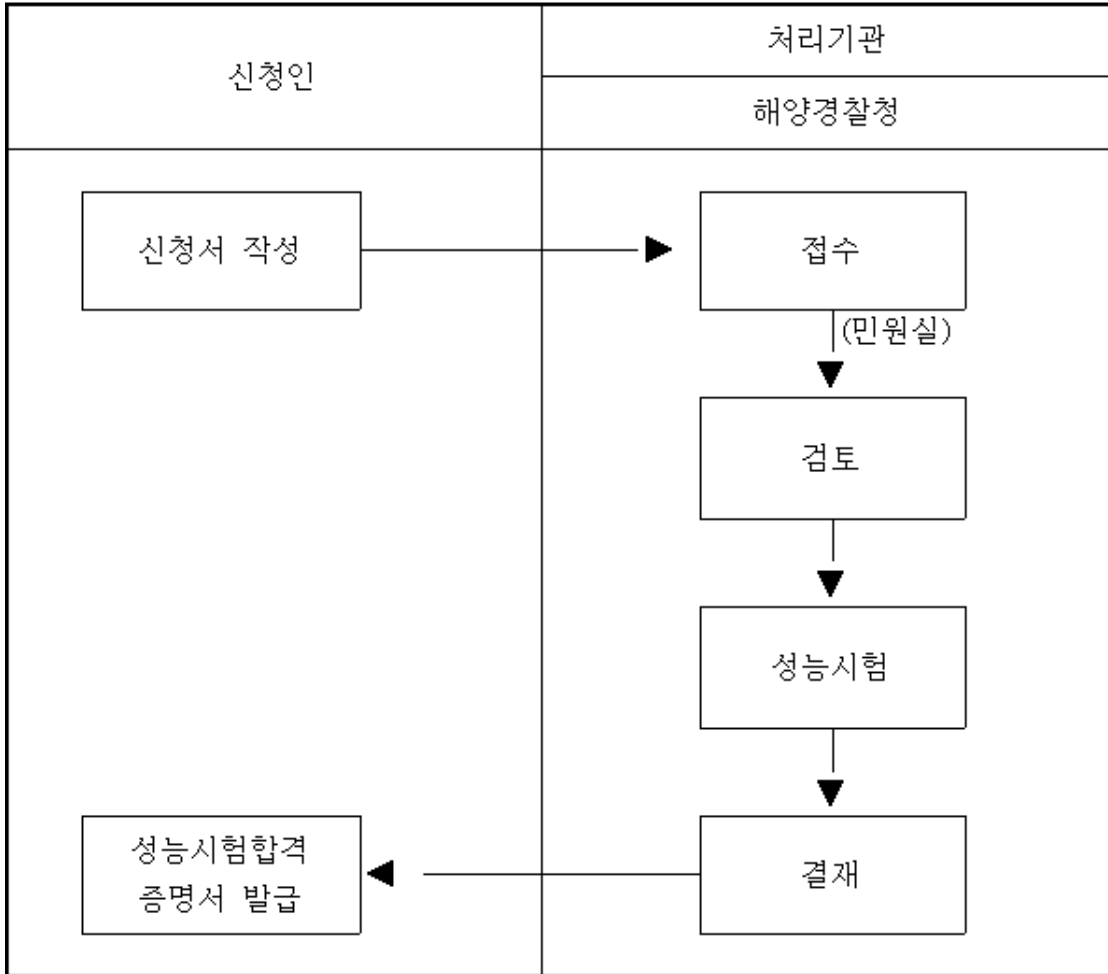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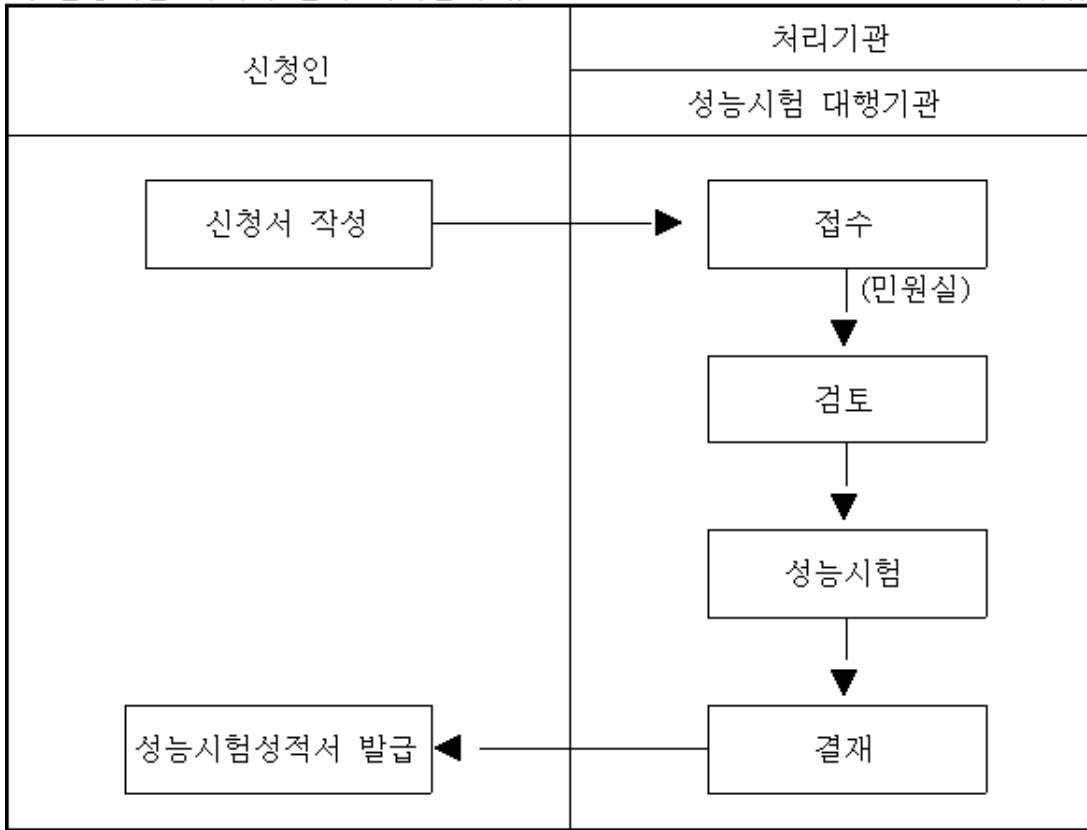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개정2013.3.24>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해양환경측정기기			
1. 시험품목			
2. 제작회사			
3. 형식			
4. 제조번호			
5. 수량	1 Set		
6. 사용용도 및 발행부수	형식승인용 1부		
7. 시험결과	"별첨"		
<p>위 해양환경측정기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성적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해양수산부장관 ㉠</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
① 품명		
② 형식		
③ 설비용량 또는 자재·약제수량		
형식승인 신청자	④ 상호 및 주소	
	⑤ 성명	
⑥ 제작·제주소(영업소)의 위치		
⑦ 제작·제조연월		
⑧ 제작·제조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 자재·약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 시험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성적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해양경찰청장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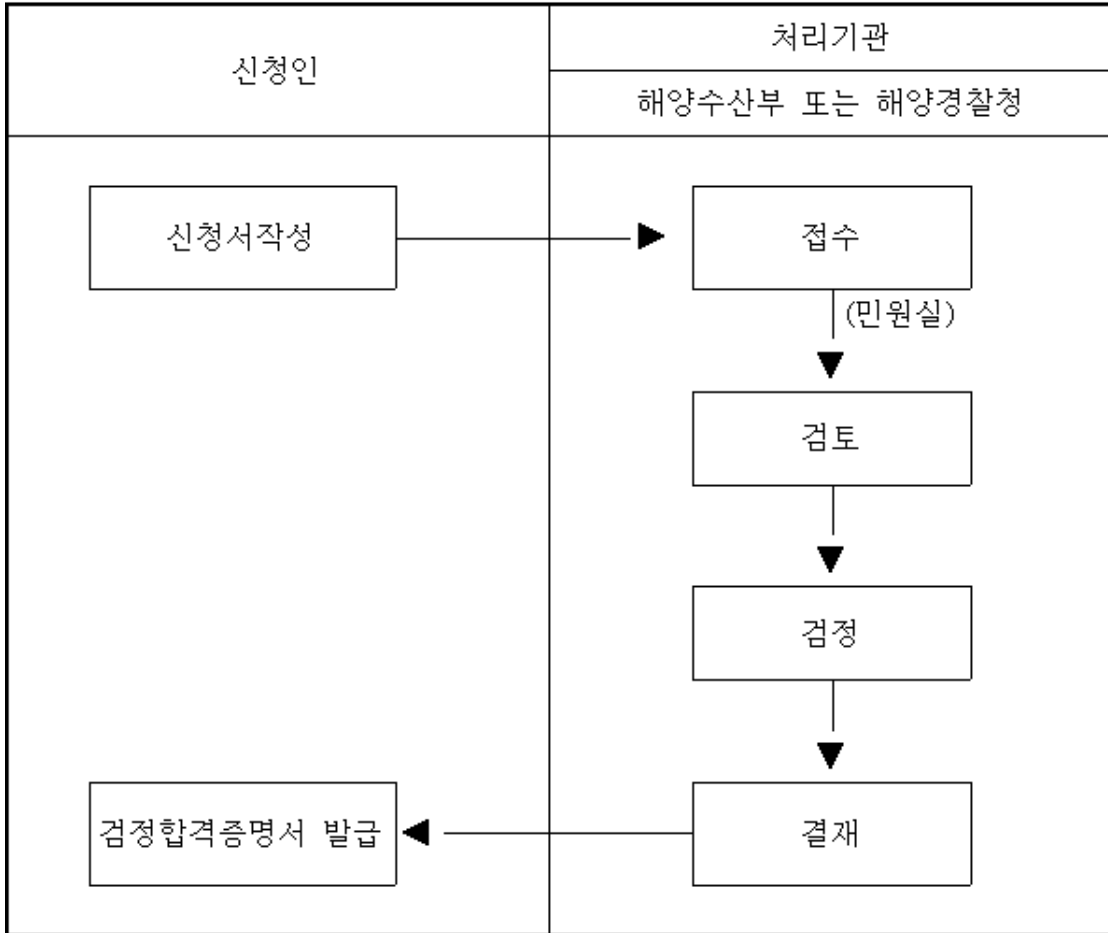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설 2011.9.29>

번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				
제 호					
① 회사명		전화번호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					
자재 · 약제	④ 종 류				
	⑤ 형 식				
	⑥ 상품명(고유명칭)	한글		영문	
	⑦ 시험방법				
	⑦ 시험결과	"별첨"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5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성능시험 대행기관의 장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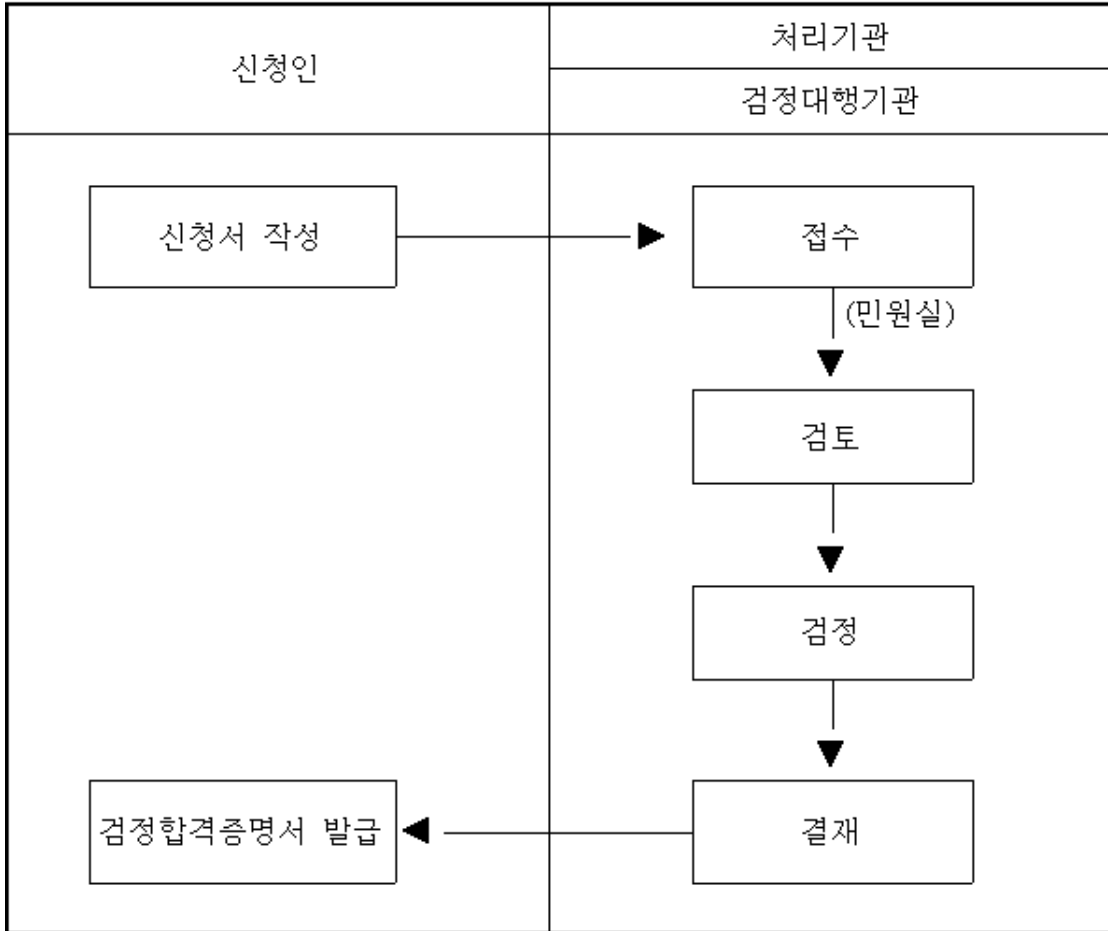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7. 7. 28.>

<p>제 호</p> <p style="margin-top: 20px;">검정합격증명서</p> <p style="margin-top: 5px;">CERTIFICATE OF INSPECTION</p> <p>1. 품명: (Name of Article)</p> <p>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p> <p>3. 수량: (Quantity)</p> <p>4. 형식승인번호: (Approval No.)</p> <p>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p> <p>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p> <p>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p> <p>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p> <p>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p> <p style="margin-top: 20px;">「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top: 5px;">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0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Y) 월(M) 일(D)</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p> <p style="text-align: center;">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6호의2서식] <신설 2011.9.29>

제 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 THAN TYPE APPROVAL SUBJECT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격 :
(Type · Size · Capacity)
3. 수량:
(Quantity)
4. 성능인증번호:
(Performance Certificate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6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년(Y) 월(M) 일(D)

검정 대행기관의 장 인
(Director of Substitutional Institution)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 <신설 2018. 5. 1.>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자재·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 상 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 상속인, 합 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
 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신 고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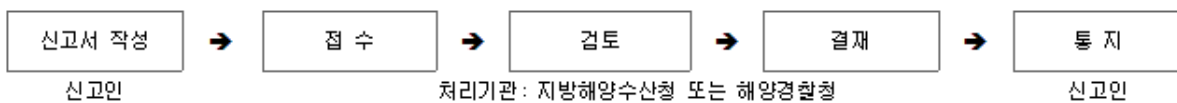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또는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서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가족관
 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7.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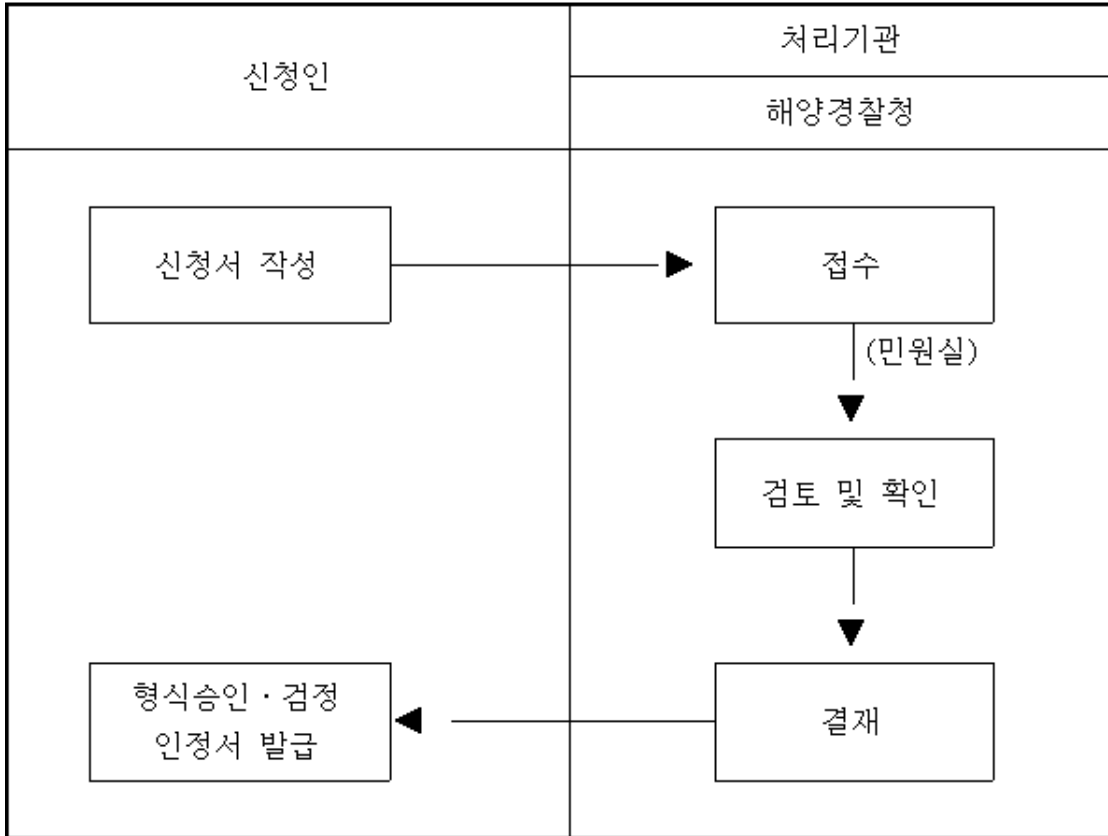
(앞쪽)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규격	
형식승인 협약당사국	국가명		승인기관	
	승인품명		승인번호	
	제작회사		제조번호	
비치 선박명			선박번호	
<p>「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해양경찰청장 귀하</p>				
구비서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

1. 선박명:
2. 선박번호:
3. 품명:
4. 형식:
5. 용량또는규격:
6. 협약당사국 :
7. 협약국 승인기관:
8. 협약국 형식승인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자재·약제로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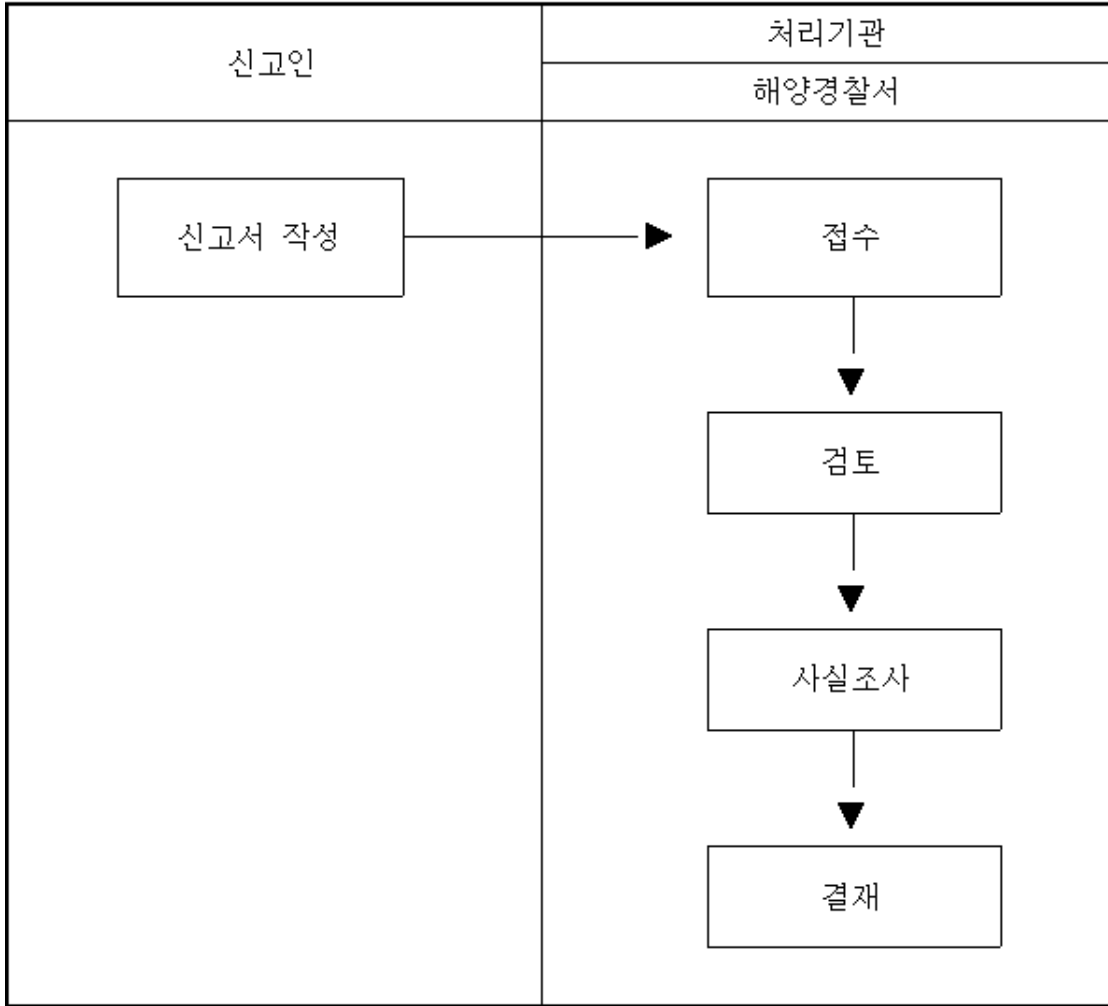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7. 7. 28.>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증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성능시험 및 검증을 대행하려는 자재·약제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대행자 지정(변경)내용 현황				
지정(변경)분야	지정(변경)연월일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근거	확 인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7. 7. 28.>

지정번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제 호			
지정자	① 명칭(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무소)		
⑤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 자재·약제의 종류			
<p>「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해양경찰청장 <input type="checkbox"/></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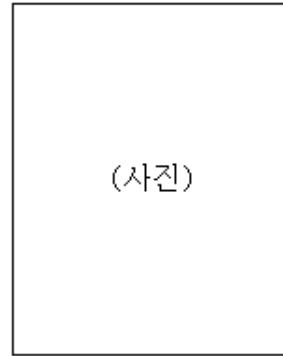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쪽)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인]

50mm × 80mm[보존용지(1종) 190g/m²]

(뒤쪽)

Register Number:

CERTIFICATE
OF MARINE ENVIRONMENTAL INSPECTION OFFICER

Employed Office:

Rank:

Name:

Date of birth:

I certify that this identification of personnel is true on dat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